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41호

2025. 2. 3.(월)

서울특별시

목 차

◈ 공 고
제2025-312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 2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5-50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87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2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 · 본부 · 국
조례안 (12건)	1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국 (재무과)
	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3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실 (경제정책과)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제실 (금융투자과)
	5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실 (금융투자과)
	6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실 (창조산업과)
	7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실 (첨단산업과)
	8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 · 본부 · 국
	9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원도시국 (정원도시정책과)
	10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11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1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실 (주차계획과)
동의안 (16건)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국 (재산관리과)
	2	서울특별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3	서울특별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4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5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6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7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8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 · 본부 · 국
	9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0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11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12	2036년 제36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 유치 동의안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3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4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15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실 (어르신복지과)
	16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실 (어르신복지과)
의견 청취안 (3건)	1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 초 · 중학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거주지 등 지역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진입규제를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자격 중 서울시 거주 또는 근무 규정 삭제(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150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11. 14. ~ 12. 4.)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재무국 재무과 양해진 (☎ 2133-323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및 의원의”를 “본인과 그”로, “사람”을 “사람(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 및 의원의 배우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을 “결산검사기간”으로, “결원된 때는”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검사위원을 선임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생략)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다음 ---------- ----------. --- -------- 본인과 그 ------- ---------- 사람(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 및 의원의 배우자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결원된 때는,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결산검사기간---------- ---------- ----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검사위원을 선임하며----------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자격 중 서울시 거주 또는 근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재무국 재무과 양해진 주무관(2133-323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추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나. 평생교육진흥원을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안 제5조의3)
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를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 11. 21. ~ 12. 11.)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송계수 (☎2133-396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평생교육진흥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민”을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관에 속하는”을 “소관의”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5조의3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④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제1항제3호 중 “관련기관간”을 “관련기관 간”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사람( )	
	주소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1. 가족관계등록부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발급기관 (발급위탁 금융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그 외 ※ 해당되는 사항은 전부 체크	
	주소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등록장애인 확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1. 가족관계등록부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발급기관 (발급위탁 금융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집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휴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회원 계정정보(ID,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CI), 회원가입동의 여부, 평생학습계좌번호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계좌 발급 및 학습이력관리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관리	5년,회원 탈퇴 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학습이력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은 제한을 받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을특별시장, 자치구청장(주민센터 포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급위탁금융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 이용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한도금액 부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핸드폰(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수집 및 제3자 제공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 제3자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자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을특별시장, 자치구청장(주민센터 포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급위탁금융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이라는 긴급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며, 위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의 진흥 및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 5.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평생교육진흥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② ------ 소관의 ----------.
<신 설>	제5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

	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5조의3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④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3. 평생교육 관련기관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② (생 략)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 1.·2. (현행과 같음) 3. ------ 관련기관 간------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략)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③ ----------.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 의회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① 삭 제	제13조(회의)
②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illegible]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사람( )	
	주소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10mm×297mm[[illegible]]

(2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illegible]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 사항	[illegibl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illegibl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illegible]

유의사항

[illegible]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illegible]

210mm×297mm[[illegible]]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illegibl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 이내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그 외 ※ 해당하는 사항을 전부 체크	
	주소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illegible]	[illegible]	수수료 없음

[illegible]

신청인 제출서류	1. [illegible] 2. [illegible] 3. [illegible] 4. [illegible]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 사항	1. [illegible] 2. [illegible] 3. [illegible] 4. [illegible] 5. [illegible] 6. [illegible] 7. [illegible] 8. [illegible] 9. [illegibl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illegible]

※ [illegible]

년 월 일

신청인(서명)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illegible]
2. [illegible]

유의사항

1. [illegible]
2. [illegible]
3. [illegible]
4. [illegible]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이용권 발급

[illegible]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illegible]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illegible]	[illegible]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illegible]	[illegible]	5년, 회원탈퇴 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학습이력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은 제한을 받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수집 및 제3자 제공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 제3자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자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illegible]	5년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위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illegible]

(앞쪽)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기존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매칭 사업(국비 70% : 시비 9% : 구비 21%)으로 전환추진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지원대상

1)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발급 가능

2) 교육부에서 서울지역은 19세 이상 시민 중 총 21,067명(일반 평생교육바우처 19,294명, 장애인평생교육바우처 1,773명)으로 인원을 배정함

※ 다만, 이는 교육부 국비 매칭 금액(1인×35만원×소진율 90%),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액(6,636,106천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인원이며 1인당 35만원 적용시 실제 지원인원은 18,960명을 선정하여 지원가능함

나. 지원단가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1인당 35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국비	4,645,274	4,645,274	4,645,274	4,645,274	4,645,274	23,226,370
	시비	597,250	597,250	597,250	597,250	597,250	2,986,250
	구비	1,393,582	1,393,582	1,393,582	1,393,582	1,393,582	6,967,910
	소계(a)	6,636,106	6,636,106	6,636,106	6,636,106	6,636,106	33,180,530
수입	국비	4,645,274	4,645,274	4,645,274	4,645,274	4,645,274	23,226,370
	구비	1,393,582	1,393,582	1,393,582	1,393,582	1,393,582	6,967,910
	소계(b)	6,038,856	6,038,856	6,038,856	6,038,856	6,038,856	30,194,280
□총 비용(a-b)		597,250	597,250	597,250	597,250	597,250	2,986,25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4,645,274	4,645,274	4,645,274	4,645,274	4,645,274	23,226,370
시비	지방세수입	597,250	597,250	597,250	597,250	597,250	2,986,25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자치구비)		1,393,582	1,393,582	1,393,582	1,393,582	1,393,582	6,967,910
합계		6,636,106	6,636,106	6,636,106	6,636,106	6,636,106	33,180,53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평생교육정책팀장 우효정
담 당 자 송계수(02-2133-3964, ks8934@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예산 : 6,636,106천원 (교육부 기준)
(국비 4,645,274천원. 시비 597,250천원, 구비 1,393,582천원)
- 지원금 산식 : 지원인원 1인당 35만원×21,067명×소진율 90%(교육부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지원인원	사업비 총계	국비 (70%)	시비 (9%)	구비 (21%)
총계	21,067	6,635	4,645	597	1,393
평생교육이용권	19,294	6,077	4,254	547	1,276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1,773	558	391	50	117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삭제
나. 여성기업 지원 관련 안건 발생 시 위원회 소집 및 소집사유 종료 후 위원회 해산 규정 신설
다. 기타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일부반영)
※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라 해촉 규정 내 임기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반영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제외대상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11. 14. ~ 12. 4.)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경제실 경제정책과 정경연 (☎ 2133-5256)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여성기업 지원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⑥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⑦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경영지도”를 “경영지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4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여성기업 지원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해촉,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	

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⑧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
2.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2.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지도 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④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 ---------- ----------.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위원회 비상설화' 등 위원회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사안이므로 비용이 미발생

4. 작성자 : 경제정책과 행정6급 정경연(02-2133-525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시의 해외 기업 · 자본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부터 제10조)
나. 기본재산의 조성, 출연금 및 기금,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1조부터 제16조)
다. 업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7조부터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일부 반영)
※ 반영(제1조, 제3조, 제5조) : 조례안의 적용 범위 명확화
※ 미반영(제7조, 제8조, 제21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이미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조항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11. 14. ~ 12. 4.) 결과: 의견없음
(2) 신 · 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 경제실 금융투자과 반가운 (☎ 2133-482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서 시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전략 수립
2. 외국인투자·정주 환경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교류 지원
4. 공간, 자금, 투자, 인재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5.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사업 등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대표이사와 감사)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2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수탁사업수입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해외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수행방식 및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앞 쪽)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재단 출연금(기본재산 및 운영비)
   -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근 거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가격기준 : 서울투자진흥재단(Invest Seoul)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 추계기간 :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 (’ 25 ~ ’ 29)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기본재산	1,000	-				1,000
	○사업비	6,008	6,105	6,204	6,305	6,407	31,029
	○인건비	3,846	3,908	3,971	4,035	4,101	19,861
	○운영경비	901	916	931	946	961	4,655
	소계(a)	11,755	10,929	11,106	11,286	11,469	56,545
수입	○이자수입	35	35	35	35	35	175
	○임대·대관수입	101	103	104	106	107	521
	소계(b)	136	138	139	141	142	696
□총 비용(a-b)		△11,619	△10,791	△10,967	△11,145	△11,327	△55,84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136	138	139	141	142	696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36	138	139	141	142	696

5. 덧붙이는 의견

- 재단 전환시 예상되는 사업비 및 인건비 등은 기존 서울시가 운영하던 사업을 신설 재단에 이전하여 재정운영 주체가 변동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투입은 아님
- 다만, 재단 설립후 5년간 비용추계가 565억원이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실행하는 등 자체 수입을 확충함으로써 재단의 서울시 재정의존도를 점차 낮출 계획임

6. 작성자 : 경제실 금융투자과 반가운(02-2133-482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기본재산 : 10억원

2. 연간예산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사업비 연 1.62% 증가, 인건비 연 1.62% 인상, 운영경비 연 1.62% 인상

연도	항 목	내 역	예상금액(억원)	산출기초
	총 계 ('25년~'29년)		565	
2025	재단설립 준비금	기본재산	10	▸현금 10억원 출연
	재 단 운 영	인건비	38	▸조 직 : 5개 팀 ▸인 원 : 50명(정규직 50명) ▸내 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사업비	60	▸중장기 투자 유치 전략 수립 ▸국내외 홍보·브랜딩, 서울 투자정보 제공 ▸서울투자환경 설명회, 투자유관기관 네트워킹 ▸투자자 발굴 및 매칭, 서울 유망기업 투자 촉진 ▸국내외 투자자초청 플래그십 행사 ▸해외 기업 유치 마케팅, 서울 클러스터 연계 마케팅 ▸FDI 종합지원,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 투자여건 개선 지원
		운영비	9	▸법정부담금,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등
		계	117	
2026	재 단 운 영	인건비	39	▸조 직 : 5개 팀 ▸인 원 : 50명(정규직 50명) ▸내 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사업비	61	▸중장기 투자 유치 전략 수립 ▸국내외 홍보·브랜딩, 서울 투자정보 제공 ▸서울투자환경 설명회, 투자유관기관 네트워킹 ▸투자자 발굴 및 매칭, 서울 유망기업 투자 촉진

연도	항 목	내 역	예상금액(억원)	산출기초
				▸ 국내외 투자자초청 플래그십 행사 ▸ 해외 기업 유치 마케팅, 서울 클러스터 연계 마케팅 ▸ FDI 종합지원,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 투자여건 개선 지원
		운영비	9	▸ 법정부담금,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등
		계	109	
2027	재 단 운 영	인건비	40	▸ 조 직 : 5개 팀 ▸ 인 원 : 50명(정규직 50명) ▸ 내 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사업비	62	▸ 중장기 투자 유치 전략 수립 ▸ 국내외 홍보· 브랜딩, 서울 투자정보 제공 ▸ 서울투자환경 설명회, 투자유관기관 네트워킹 ▸ 투자자 발굴 및 매칭, 서울 유망기업 투자 촉진 ▸ 국내외 투자자초청 플래그십 행사 ▸ 해외 기업 유치 마케팅, 서울 클러스터 연계 마케팅 ▸ FDI 종합지원,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 투자여건 개선 지원
		운영비	9	▸ 법정부담금,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등
		계	111	
2028	재 단 운 영	인건비	40	▸ 조 직 : 5개 팀 ▸ 인 원 : 50명(정규직 50명) ▸ 내 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사업비	63	▸ 중장기 투자 유치 전략 수립 ▸ 국내외 홍보· 브랜딩, 서울 투자정보 제공 ▸ 서울투자환경 설명회, 투자유관기관 네트워킹 ▸ 투자자 발굴 및 매칭, 서울 유망기업 투자 촉진 ▸ 국내외 투자자초청 플래그십 행사 ▸ 해외 기업 유치 마케팅, 서울 클러스터 연계 마케팅 ▸ FDI 종합지원,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 투자여건 개선 지원
		운영비	10	▸ 법정부담금,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등
		계	113	
2029	재 단 운 영	인건비	41	▸ 조 직 : 5개 팀 ▸ 인 원 : 50명(정규직 50명) ▸ 내 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사업비	64	▸ 중장기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연도	항 목	내 역	예상금액(억원)	산출기초
				▸ 국내외 홍보· 브랜딩, 서울 투자정보 제공 ▸ 서울투자환경 설명회, 투자유관기관 네트워킹 ▸ 투자자 발굴 및 매칭, 서울 유망기업 투자 촉진 ▸ 국내외 투자자초청 플래그십 행사 ▸ 해외 기업 유치 마케팅, 서울 클러스터 연계 마케팅 ▸ FDI 종합지원,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 투자여건 개선 지원
		운영비	10	▸ 법정부담금,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등
		계	115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내국인으로만 한정한 조항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글로벌 인재 유치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에 내국인 신규 고용 인원으로 한정했던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관내에서 신규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11. 14. ~ 12. 4.) 결과: 의견있음(미반영).
※ 의견내용 : ① 재난안전산업 위원회 관련 사항 권고
② 재난안전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추가 요청 등
※ 미반영 사유 : 동 조례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미반영함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경제실 금융투자과 선창우 (☎ 2133-476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 중 “내국인을 신규로”를 “관내에서 신규로 인력을”로 한다.

제2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시의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하거나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료의 감면) ①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시의 재산을 임대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제15조(고용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고용보조금) ---------- ---------- 관내에서 신규로 인력을 ---------- ---------- ----------.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규칙) ---------- 필요한 ----------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지급되던 고용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용인도 포함하도록 ‘외국인’ 문구를 삭제한 것임. 다만, 매년 고용보조금 예산 총액 내에서 회사별 지급한도는 기존과 같이 2억 원 이내로 유지되므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경제실 금융투자과 선창우 주무관(2133-4764)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조례 규정 당시와 기능이 달라진 부분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재정비함(안 제9조, 제11조)
나. 공공성이 강한 단지관리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규정을 재정비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11. 7. ~ 11. 27.)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경제실 창조산업과 안경모 (☎ 2133-921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 중 “기업,연구소”를 “기업, 연구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제12조제3항 중 “민간”을 “공공단체 또는 민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된”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담당사무관으로 한다”를 “담당사무관이 맡는다”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입주자와 계약 등의 관계를 가지고 참여하는 디지털미디어시티 외의 기업,연구소, 교육기관 등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 ---------- -- 기업, 연구소---------- --------.
제9조(택지의 공급기준) ① 시장이 택지 공급을 하려면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9조(택지의 공급기준) ① ---- ----------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택지의 공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 ---------- ----------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제11조(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개발할 수 있다.	제11조(중소·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입주자 지원사업) ①·② (생 략)	제12조(입주자 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및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공공단체 또는 민간--.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	제14조(구성) ① ----------

으로 구성한다.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 호선된 사람 1명으로 한다.	② ----------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
③ 위원은 시의원과 국내외 유수기업의 최고경영자, 대학교수 등 디지털미디어시티 발전과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 --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 관리·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 ---------- ----- 필요한 ---------- ----------.
제19조(자문단 운영) ① (생 략)	제19조(자문단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 필요한 ----------.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단순 문구 수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경제실 창조산업과 안경모 (☎ 2133-9211)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4조)
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연구시설 및 산학연의 공동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융합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하고, 양자산업 생태계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노력 및 기업육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자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일부반영)
※ 조례안 제13조의 제척규정 보완 의견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음
※ 조례안 제14조제1항의 위탁사무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제5조에서 제8조까지의 사무'로 위탁사무를 구체화하였음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조례안 제11조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적정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11. 14. ~ 12. 4.)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 경제실 첨단산업과 박세준 (☎ 2133-874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제어·계측·전송·저장·처리하는 기술로써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방안
3.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 및 육성방안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5.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 전문 운영인력 확보 방안
2. 연구시설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연구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의 수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공동기술 개발 촉진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융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양자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양자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 우수 양자 전문인력의 유치 및 활용
3. 그 밖에 양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산학연 협력 촉진 및 기업 육성) ① 시장은 양자산업 생태계 촉진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활용 및 창업 지원
2. 기술개발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지원
3.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그 밖에 양자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양자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자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현안 및 업무의 조정
3.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5조에서 제8조까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양자 전문인력 양성 등) 등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가격기준 : 2025년 예산(안)

나. 추계기간 : 2025년 ~ 2029년(5년)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

다. 추계방법

- 해당 조례가 처음 시행되는 2025년도의 예산안 및 양자기술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기준으로 비용을 작성하였으며, (가칭) 양자기술융합지원센터의 2026년 하반기 개관 계획에 따라 비용을 추계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지출	○ 연구시설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	1,250,000	950,000	650,000	650,000	3,500,000
	○ 양자 전문인력 양성	2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650,000
	소계(a)	250,000	1,600,000	1,300,000	1,000,000	1,000,000	5,150,000
수입	-	-	-	-	-	-	-
	소계(b)	-	-	16,398	16,398	16,398	49,194
□총 비용(a-b)		250,000	1,600,000	1,283,602	983,602	983,602	5,100,80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250,000	1,600,000	1,283,602	983,602	983,602	5,100,806
	세외수입	-	-	16,398	16,398	16,398	49,494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250,000	1,600,000	1,300,000	1,000,000	1,000,000	5,150,000

5. 덧붙이는 의견 : 아직 양자기술산업 육성 사업은 생태계구축을 위한 초기 단계 추진 중으로,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은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경제실 첨단산업과 박세준(02-2133-8749)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연구시설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 2차년도(2026년)

- 지원센터 인건비 : 54,000천원 * 4인 * 8/12= 144,000천원
- 지원센터 운영비 등: 106,000천원
- 양자패키징실 조성 : 100,000천원
- 연구 장비 등 구입: 150,000천원 * 6종 = 900,000천원

○ 3차년도(2027년)

- 지원센터 인건비 : 54,000천원 * 4인 = 216,000천원
- 지원센터 운영비 등: 134,000천원
- 연구 장비 등 구입 : 150,000천원 * 4종 = 600,000천원

○ 4~5차년도(2028년, 2029년)

- 지원센터 인건비 : 54,000천원 * 4인 = 216,000천원
- 지원센터 운영비 등: 134,000천원
- 연구 장비 등 구입 : 150,000천원 * 2종 = 300,000천원

2. 양자 전문인력 양성

○ 1차년도(2025년)

- 양자산업 기술사업화 심화과정: 250,000천원

○ 2~5차년도(2026년~2029년)

- 양자산업 기술사업화 심화과정: 250,000천원
- 양자산업 비전문인 과정, 대중화 교육 등 : 100,000천원

3. 지원센터 사용료 (2027년~2029년)

○ **연 사용료 = 재산평정가격 * 요율 / 건물 전체면적 * 사용면적**

= 5,286,980천원 * 0.01 / 2,128㎡ * 660㎡ = 16,398천원

※ 지원센터 연면적 2,128㎡, 입주공간(2,3층) 면적 660㎡

- 재산평정가격 = 토지평가액 +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평가액 = ’24년 공시지가 3,578천원 * 1,189㎡ = 4,254,240천원

▸ 건물평가액 = 1,399,630/2,884㎡ * 2,128㎡ = 1,032,740천원

※ 건물평가액은 서울바이오허브 BT-IT융합센터 참고(2,884㎡, 1,399,630천원)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위원회) 운영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사이클링’을 ‘새활용’으로 순화(안 제2조~제4조, 제6조, 제10조)
나. 위원회 비상설화 및 부위원장직 삭제(안 제16조)
다.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조항 정비(안 제17조~제18조)
라. 그 밖의 자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의견내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이해충돌방지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항이므로 유지
※ 반영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유지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사항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 10. 31. ~ 11. 20.)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박우현 (☎ 2133-3696)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업사이클링” 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용답동)에 위치해있으며, 새활용”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 “업사이클링” 이란” 을 “ “새활용” 이란” 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업사이클링” 을 각각 “새활용” 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업사이클링” 을 각각 “새활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이하 “소재은행” 이라 한다)” 을 “시설”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업사이클링” 을 “새활용”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서울새활용플라자” 를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 로, “시설은” 을 “시설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을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을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으로,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를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업사이클링” 을 “새활용”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위촉직과 당연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을 “위원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0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서울새활용플라자”란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시민의 재활용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용답동)에 위치해있으며, 새활용---------- --------.
2. “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새활용”이란 ---------- ----------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 ---------- ---.
1.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1. 새활용---------- ----------
2.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2. 새활용---------- ---------- ----------
3.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문화 확산	3. 새활용---------- ----------

4.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에 대한 교육, 전시, 체험 공간 제공	4. 새활용----------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설치) ----------.
1. 국내·외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1. ------ 새활용----------
2.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제품·작품을 생산·연구하는 공간	2. 새활용----------
3.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제품·작품의 생산·연구 등에 필요한 소재를 조달·가공·판매하는 시설(이하 “소재은행”이라 한다)	3. 새활용---------- 시설
4.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제품·작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	4. 새활용----------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 ①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 ---------- 시설의 ---------

료를 부과·징수한다.	---------- ---------- ----------.
②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 ---------- ----------.
③ 제2항의 적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1.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2. 그 밖에 재활용 문화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 ----------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제10조(입주자 등 지원)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입주한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제10조(입주자 등 지원) ① ----- ---------- 새활용---------- ---------- ----------

있고,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6조(구성) ① ------ 위촉직과 당연직----------.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	<삭 제>	

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	<삭 제>	

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		

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20조(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한다.	제18조(운영) <삭 제>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 ~ ⑥ (생 략)	① ~ ④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구성 등을 수정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박우현 (☎ 2133-751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보훈보상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공원 입장료 감면 및 캠핑장(글램핑장, 캠프시설) 등의 이용료 기준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추가(안 제20조제1항제15호, 제16호 신설)
나. 경과규정이 만료(2021년 12월)된 제로페이 감면 규정 삭제(안 제20조제4항)
다. 글램핑장 및 캠프시설 등의 이용료 기준 마련 및 유형별 구분·정비(안 별표2)
라. 그 외의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있음(일부반영)
※ 의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공원 입장료 감면 대상으로 포함
※ 반영사항: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그 외의 감면 대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후 향후 조례 개정 시 개선안 내용 반영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작성자: 정원도시국 정원도시정책과 방지혜(☎ 2133-201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법 제2조제5호"로 한다.

1. "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공원단위"를 "공원 단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 할"을 "설치할"로, "역사관련시설"을 "역사 관련 시설"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단계별집행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의고시일부터2년"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12조제2호가목 및 마목 중 "된다.다만,"을 각각 "된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따른다.공원관리청은"을 "따른다. 공원관리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및 이용료"를 "또는 이용료"로, "및 신용카드"를 "또는 신용카드"로, "있다.이 경우"를 "있다. 이 경우"로, 같은 항 후단 중 "적용하여 받고"를 "적용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원시설을 3개월 이내로 이용할 경우 이행보증금(시설이용료의 15 이내)을 예치하여야"를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공원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행보증금(시설이용료의 15퍼센트 이내)을 예치하도록 하여야"로, "끝난"을 "완료된 것을 확인한"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4호 중 "서울특별시"를 "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24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를 “시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를 “시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자치구”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1. 체육시설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40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 할인, 어린이는 무료. (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일반운동장(광장)			5~10	10~20	
	축구장	잔디	1회 2시간	120,000~156,000	300,000~390,000	
		인조잔디		55,000~82,500	110,000~143,000	
	풋살경기장	10인용		25,000~32,500		
		6인용		15,000~19,500		
	테니스장	실외	1면당, 2시간당	8,000~16,000		
		실내	1면당, 2시간당	25,000~37,5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6,000 3,000~4,000 2,000~3,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		
	국궁장		1일(3시간)	2,000~4,000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 할인 ◦청소년·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개월	20,000~40,000		
서울대공원	성인야구장		1일	70,000~91,000	200,000~260,000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
			3시간	42,000~54,600		
	리틀야구장		1일	35,000~46,000	100,000~130,000	
			3시간	21,000~27,300		

2. 휴양시설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야영장(캠핑장)	일반	야영장소 1회당	10,000~30,000	◦ 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인 경우 20인(야영장소 5면) 이상 이용시 30% 할인
		글램핑	야영장소 1회당	90,000~120,000	
		캠프시설	개소당	5,000~20,000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바비큐존 등)		
		전기료	전기 1회당	3,000~5,000	
	야영장(캠핑장) 물품대여료		야영텐트 1회당	5,000~20,000	
			1인용매트 1회당	1,000~1,500	
서울대 공원	서울대공원 캠핑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4,000 1,500 ~ 3,000 1,000 ~ 2,000	

3. 교양시설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300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포함)	1㎡당, 1시간당	100~200	◦일(8시간) 단위 계산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실내공간에 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 · 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야외무대	2시간당	100,000~150,000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8,000~12,000 5,000~8,000 3,000~5,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키 140cm 이상

4. 기타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사진·영상 촬영녹화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13,000~19,500 6,500~13,000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 (1일당)	1,000~20,0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 징수
남 산 공 원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 (16인승이상)	3,000 ~ 6,000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장애인콜택시·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이하)	2,000 ~ 4,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	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4. -------- 법 제2조제3호----------.
5. “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5. ------ 법 제2조제5호----------.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의 도시공원 중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생 략)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공원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공원 단위----------. ------ ---------- 시장-------- ---------- ---------- ---------- ----------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공원관리청이 직접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한다. 다만 ---- ---------- ---------.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의 역사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 ---------- 설치할 --- ---------- -- 역사 관련 시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점용허가대상 공원) 공원관리청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점용허가대상 공원)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고시일부터2년이 경과한 공원	3. ---------- ---------- 단계별 집행계획---------- ---------- ---------- ----------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2. ---------- ----------
가.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 ----------된다. 다만, ---------- ----------.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 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	라. ---------- ---------- ----------

여야 한다.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다. 다만, ----------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 ---------- ---------된다. 다만, --- ---------- ---------- ---------- ---------- ---------- ----------.
바. ~ 자. (생 략)	바. ~ 자.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① (생 략)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 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	② ---------- ---------- ---------- ---------- ---------- 따른다. 공원관리청은 ----------

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외국환 및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이 경우 환율은 서울특별시 금고 은행의 전일 최종 현금 매입가를 적용하여 받고, 거스름돈이 있을 경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 또는 이용료---- --- 또는 신용카드---------- 있다. 이 경우 ---------- ---------- 적용하고-------- ----------.
④ 공원시설을 3개월 이내로 이용할 경우 이행보증금(시설이용료의 15 이내)을 예치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공원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행보증금(시설이용료의 15퍼센트 이내)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 ---------- 완료된 것을 확인한 ---------- ----------.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다만, 서울대공원은 경기도	14.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

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족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	---------- ---------- ---------- --
<신 설>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1의 입장료나 별표 2의 공원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1. 별표 1의 입장료 :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다만,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별표 2의 공원시설 이용료 :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제24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16조제4항,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 시에 ----------.
제32조(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①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의 사무관할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제32조(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① ---------- 시와 ----------.
② 공원 또는 녹지의 취득·조성 및 기존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1항의 사무관할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자치구----------.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체육경기	금 액(원) 기타행사	비 고
공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40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 할인, 어린이는 무료. (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일반운동장(광장)			5~10	10~20	
	축구장	잔디	1회 2시간	120,000~156,000	300,000~390,000	
		인조잔디		55,000~82,500	110,000~143,000	
	풋살경기장	10인용		25,000~32,500		
		6인용		15,000~19,500		
	테니스장	실외	1면당, 2시간당	8,000~16,000		
		실내	1면당, 2시간당	25,000~37,5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6,000 3,000~4,000 2,000~3,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		
	야영장(캠핑장)		야영장소 1회당	10,000~30,000		◦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인 경우 20인(야영장소 5면) 이상 이용시 30% 할인
			전기 1회당	3,000~5,000		
	야영장(캠핑장) 물품대여료		야영텐트 1회당	5,000~20,000		
			1인용매트 1회당	1,000~1,500		
	사진·영상 촬영녹화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13,000~19,500 6,500~13,000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 (1일당)	1,000~20,000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300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1. 체육시설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체육경기	금 액(원) 기타행사	비 고
공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40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 할인, 어린이는 무료. (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일반운동장(광장)			5~10	10~20	
	축구장	잔디	1회 2시간	120,000~156,000	300,000~390,000	
		인조잔디		55,000~82,500	110,000~143,000	
	풋살경기장	10인용		25,000~32,500		
		6인용		15,000~19,500		
	테니스장	실외	1면당, 2시간당	8,000~16,000		
		실내	1면당, 2시간당	25,000~37,5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6,000 3,000~4,000 2,000~3,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		
	국궁장		1일(3시간)	2,000~4,000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 할인 ◦청소년·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개월	20,000~40,000		
서울대공원	성인야구장		1일	70,000~91,000	200,000~260,000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
			3시간	42,000~54,600		
	리틀야구장		1일	35,000~46,000	100,000~130,000	
			3시간	21,000~27,300		

2. 휴양시설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야영장(캠핑장)	일반	야영장소 1회당	10,000~30,000	◦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인 경우 20인(야영장소 5면) 이상 이용시 30% 할인
		글램핑	야영장소 1회당	90,000~120,000	
		캠프시설	개소당 (바비큐존 등)	5,000~20,000	
		전기료	전기 1회당	3,000~5,000	
	야영장(캠핑장) 물품대여료		야영텐트 1회당	5,000~20,000	
			1인용매트 1회당	1,000~1,500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캠핑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4,000 1,500 ~ 3,000 1,000 ~	

				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공연장(복합문화공간 포함)	1㎡당, 1시간당	100~200	◦일(8시간) 단위 계산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실내공간에 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야외무대	2시간당	100,000~150,000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8,000~12,000 5,000~8,000 3,000~5,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 키 140cm 이상
	국궁장	1일(3시간)	2,000~4,000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 할인 ◦청소년·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개월	20,000~40,0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징수
남산공원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16인승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이하)	3,000 ~ 6,000 2,000 ~ 4,000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장애인콜택시·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무료
서울대공원	성인 야구장	1일	70,000 ~ 91,000 / 200,000 ~ 260,000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2,000	

3. 교양시설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300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공연장(복합문화공간 포함)	1㎡당, 1시간당	100~200	◦일(8시간) 단위 계산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실내공간에 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야외무대	2시간당	100,000~150,000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8,000~12,000 5,000~8,000 3,000~5,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키 140cm 이상

4. 기타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시진·영상 촬영녹화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13,000~19,500 6,500~13,000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 (1일당)	1,000~20,0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 징수
남산공원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 (16인승이상)	3,000 ~ 6,000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장애인콜택시·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무료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이하)	2,000 ~ 4,000	

	3시간	42,000 ~ 54,600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 (토, 공휴일은 제외) ◦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
리틀 야구장	1일	35,000 ~ 46,000	100,000 ~ 130,000	
	3시간	21,000 ~ 27,300		
서울대공원 캠핑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4,000 1,500 ~ 3,000 1,000 ~ 2,00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요금의 감면) 제1항에 ‘보훈보상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하여 서울대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행기간: 비용은 조례 공포·시행 예정인 2025 3월 이후 발생

○ 면제시설 및 면제금액

– 서울대공원 입장료 전액 면제

대 상 시 설	입장료
서울대공원	동 물 원 : 5,000원(성인기준) 테마가든 : 2,000원(성인기준)

○ 예상 무료 입장비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입장 비율 적용 : 5.4%]

$$\frac{\text{6,478명 (서울대공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무료입장객 수)}}{\text{120,052명 (서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수)}} = 5.4\%$$

※’ 23.12월 말 기준

– 감면인원: 연 23,925명

[{서울시 보훈보상대상자 등(1,788명), 서울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441,261명)} × 5.4%]

– 감 면 액: 연 83,738천원(감면대상 23,925명 × 3,500원)

※ 관람료는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동물원(5천), 테마가든 입장료(2천)의 50% 적용

○ 비용추계 산식

- 1차연도: 연 감면규모(83,738천원) × 306일/365일 = 70,202천원

※ 2025. 3월 이후 공포 예정으로 1차 연도는 306일(’ 25.3~12, 10개월) 적용

- 2차연도 이후: 연 감면규모 83,738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수입	○면제입장료	70,202	83,738	83,738	83,738	83,738	405,154
	소계(b)	70,202	83,738	83,738	83,738	83,738	405,15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70,202	83,738	83,738	83,738	83,738	405,154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70,202	83,738	83,738	83,738	83,738	405,154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서울특별시 정원도시정책과 방지혜 (☎2133-2017)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시에서 조성·운영 중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 위임 및 민간 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의2 신설)
나. 그 밖의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 11. 14. ~ 12. 4.)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윤 민 (☎ 02-2133-764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을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으로, “정상적”을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시행규칙 제11조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을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을 “시행규칙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동물복지지원센터의 위임 또는 위탁)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생 략) 8. “사육포기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인수를 요청한 동물을 말한다. 9. ~ 15. (생 략)	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 7. (현행과 같음) 8. ----------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 9. ~ 15. (현행과 같음)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 ② (생 략) ③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1. 시행규칙 제11조에서 ----------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2. ----------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맹견의 관리)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맹견의 관리) ① ---------- 시행규칙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육포기 동물 인수 등 관리)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동물 인수신청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18조(사육포기 동물 인수 등 관리) ① ----------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6.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동물복지지원센터의 위임 또는 위탁)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추계 요약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 · 위원회 ·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위임 또는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윤 민(☎2133-7649)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규정 신설 (안 제4조)
나.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 규정 신설 (안 제5조부터 제7조)
다.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안 제8조부터 제1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일부반영)
※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개선의견을 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조사관련 사항은 조례안과 무관하여 미반영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적정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해당없음
기 타
(1) 입법예고 (2024.11.14.~12.4.) 결과: 의견있음(일부반영)
※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 임명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의견 반영, 비상설위원회 운영방법 변경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황태현(☎ 2133-804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을 통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지원
2.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3.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재난안전 대응 공간·제품·시각·미디어·서비스 등 안전디자인 개발 및 품질평가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실증실험) ① 시장은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 신청제품을 모집하기 위해 지원 목적 및 지원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증실험을 통해 성능·기술이 검증된 기술 및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실증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증실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혁신적 기술 발굴·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 서울특별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재난안전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중 행정2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는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

제14조(포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 및 제7조(실증실험)

–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신기술 실증실험 등 육성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향후 5년(2025년~2029년)

○ 지출

– 연구용역비 :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인건비 등)

– 사무관리비 :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실증실험 평가 (용역비)

○ 비용지급대상 : 서울연구원, 공인시험기관

– 서울연구원 : 서울시 출연 정책연구기관

– 공인시험기관(KORAS) : KTR시험연구원, KCL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평가업체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연구용역비	-	100,000	-	-	-	100,000
	○ 사무관리비	-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00,000
	소계(a)	-	3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수입	-	-	-	-	-	-	-
	-	-	-	-	-	-	-
	소계(b)	-	-	-	-	-	-
□총 비용(a-b)		-	3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	3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	3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황태현(2133-804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00,000천원/5년 연구용역비(종합계획,5년)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비용추계 (부산 61,600천원, 경북 50,000천원)
실증실험 용역 (사무관리비)	200,000천원/연 = 용역비 평균 1000만원/건 x 20건/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공무수행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시설의 주차특성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며, 그 밖에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가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수정(안 제2조)
나. 공익목적을 위한 공무수행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제15호 신설)
다. 학교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그 밖의 건축물’ 적용 대상시설 중 학교시설을 따로 분류하여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250㎡당 1대로 변경(안 별표 2의 제10호)
- ‘그 밖의 건축물’ 대상시설 중 ‘대학생기숙사’를 ‘학생용기숙사’로 변경(안 별표 2의 제10호 및 비고 제10호)
라.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개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외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비율을 조례에 신설(안 별표 2 비고 제11호 신설)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반영(안 별표 3 비고 제4호)
마. 기타 자구 수정 및 상위법령 인용조문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 10. 24. ~ 11. 13.)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교통실 주차계획과 성지연 (☎ 2133-235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 자기 차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를 “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영 제1조의2제3항”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으로 하고,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서울특별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수행 자동차

다. 공익목적을 위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 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전단 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를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고,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25조의2제5항 중 “별도3”을 “별도 3”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도 제4호 서식”을 “별도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4호”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제20조제1항 관련)”을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20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 설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 학교시설 : 시설면적 250㎡당 1대 ○ 학생용기숙사, 학교시설을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

별표 2 비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생용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별표 3 비고 제4호 본문 중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를 “부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 ·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 자기 차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급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2. ---------- 시장----------.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의2(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 법 제3조제2항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주차장 설치 지원) 시장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주차장 설치 지원)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생 략)	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②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 ---------- ---------- ---------- ----------한다. 다만,----------

있는 부분과 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 또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각 호의 자격이 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 ---- 시장 ---------- ---------- ---------- ---------- ---------- ----------.
6. ~ 7의2. (생 략)	6. ~ 7의2. (현행과 같음)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	8. ---------- ---------- ---------- 상권활성화 구역---------- ----------

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 ---------- ---------- ---------- ---------- ---------- ---------- ----------.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삭 제>
12. 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납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삭 제>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수행 자동차
	다. 공익목적을 위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 제13조제1항 제1호----------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① ------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표지 상단에 서울특별시 또는 관리수	제19조(주차장의 표지) -------- ---------- ---------- ---------- ---- 시 ----------

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 ---------- ---------- ---------- -한다. 다만,----------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④ (생 략)	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도3에 따른다.	⑤ ---------- ---- 별도 3-------.
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 ---------- ---------- ----------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한다.	---------- ---------- ---.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도 제4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 ---- 별도 제4호서식-------- ---------- ----------.
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시설물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사업자에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6호----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 대학생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 <신 설> ○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

<비고>

10. '대학생기숙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주거를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 학생용기숙사: ---------- ○ 학교시설: 시설면적 250㎡당 1대 ○ 학생용기숙사, 학교시설을 ----: ----------

<비고>

10.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생용

위해 대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비고>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비고>
4.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 ---------- ---------- 부지 ---------- ---------- ---------- ---------- ----------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며, 그 밖의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교통실 주차계획과 성지연 (☎ 2133-2353)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취득 2건임

○ 취득 2건은 신축취소 1건과 교환취득 1건임

나. 취득 2건

○ 신축취소 1건에 대한 세부내역

당초 의정부지(국가 사적 제558호 지정('20.9.24.), 종로구 세종로 76-14 일대)에 유구보호시설을 건립(2,400.00㎡)하고자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유구보호시설 설계안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유로 사업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신축 취소

○ 교환취득 1건에 대한 세부내역

市공원인 명일근린공원 내 국가보훈부 소유의 국유지(강동구 상일동 145-6)를 부지 소유와 관리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공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내 시유지와 교환하여 취득(8,975.00㎡)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2건

- 신축취소 1건 : 건물 2,400.00㎡
- 교환취득 1건 : 토지 8,975.00㎡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 의정부지(국가 사적 제558호 지정(‘20.9.24.), 종로구 세종로 76-14 일대)에 유구보호시설을 건립(2,400.00㎡)하고자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 되었으나,

유구보호시설 설계안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유로 사업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신축 취소하고,

市공원인 명일근린공원 내 국가보훈부 소유의 국유지(강동구 상일동 145-6)를 부지 소유와 관리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공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내 시유지와 교환하여 취득(8,975.00㎡)하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2건

- 신축취소 1건 : 건물 2,400.00㎡
- 교환취득 1건 : 토지 8,975.00㎡

첨 부

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이 전			금 회			합 계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취득	계	토지	1	20,224.27	112,516,594	1	8,975.00	1,915,265	2	29,199.27	114,431,859
		건물	13	113,600.13	877,151,873	1	24,000.00	23,283,000	14	137,600.13	900,434,873
		기타	1	-	9,300,000	-	-	-	1	-	9,300,000
	매입 및 신축	토지	-	16,981.60	87,366,157	-	-	-	-	16,981.60	87,366,157
		건물	2	34,807.30	185,307,000	-	-	-	2	34,807.30	185,307,000
	신축 등	건물 등	6	12,549.00	77,709,267	-	-	-	6	12,549.00	77,709,267
	기부채납	토지	1	122.97	1,153,705	-	-	-	1	122.97	1,153,705
		건물 등	1	14,178.95	76,855,209	-	-	-	1	14178.95	76,855,209
	증축 등	건물 등	2	24,441.98	384,699,041	-	-	-	2	24,441.98	384,699,041
	매입	선박	1	-	9,300,000	-	-	-	1	-	9,300,000
	신축(취소)	건물	1	23,181.90	129,787,000	1	24,000.00	23,283,000	2	47,181.90	153,070,000
	교환	토지	-	-	-	1	8,975.00	1,915,265	1	8,975.00	1,915,265
	교환 및 신축	토지	-	3,119.70	23,996,732	-	-	-	-	3,119.70	23,996,732
		건물	1	4,441.00	22,794,356	-	-	-	1	4,441.00	22,794,356
처분	계	토지	2	51,300.20	292,125,922	-	-	-	2	51,300.20	292,125,922
		건물	-	29,477.11	8,710,127	-	-	-	-	29,477.11	8,710,127
		공작물	1	3,314.41	3,019,599	-	-	-	1	3,314.41	3,019,599
	교환	토지	1	3,300.20	15,213,922	-	-	-	1	3,300.20	15,213,922
		건물	-	-	-	-	-	-	-	-	-
	매각 및 멸실	토지	1	48,000.00	276,912,000	-	-	-	1	48,000.00	276,912,000
		건물	-	29,477.11	8,710,127	-	-	-	-	29,477.11	8,710,127
	멸실	공작물	1	3,314.41	3,019,599	-	-	-	1	3,314.41	3,019,599

2.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25년도 제1차 수시분)

일련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구	동	번지					
계					11,375.00	25,198,265			
1	건물 신축 (취소)	종로구	세종로	76-14 일원	2,400.00	23,283,000	-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 취소	문화본부 문화유산활용과
2	토지 교환	강동구	상일동	145-6	8,975.00	1,915,265	2025	독립근린공원 내 「독립의 전당」 건립 관련 국·시유지 교환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

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약(’ 25년도 제1차 수시분)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세 부 내 용
		종류	건수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 사업 취소	취 득 (신축 취소)	건물	1	2,400.00	23,283,000	- 목적 및 용도 :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 취소 - 대 상 지 : 종로구 세종로 76-14 일원 - 사업기간 : ’ 19. 10월 ~ ’ 22. 6월 - 소요예산 : 23,283,000천원 - 사업규모 : 건물 2,400.00㎡ - 기준가격 명세 : 건물 23,283,000천원 - 계약방법 : <건물신축-취소>
독립근린공원 내 「독립의 전당」 건립 관련 국·시유지 교환	취 득 (교환)	토지	1	8,975.00	1,915,265	- 목적 및 용도 : 시공원(명일근린공원) 내 소유와 관리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국·시유재산 교환 - 대 상 지 : 강동구 상일동 145-6 - 사업기간 : ’ 24. 4월 ~ ’ 25. 9월 - 소요예산 : 비예산 - 사업규모 : 토지 8,975.00㎡ - 기준가격 명세 : 토지 1,915,265천원 - 계약방법 : 감정평가에 의한 교환

서울특별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나. 청소년 인터넷중독예방상담 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관련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아울러, 소규모센터 재구조화를 통하여 종합·총괄기능을 갖춘 1개 대표센터와 5개 부서단위 운영으로 업무체계화와 전문성 강화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인터넷중독 상담·치료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
○ 기타 인터넷중독 예방·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1층
○ 시설규모 : 200.52㎡

○ 주요시설 : 개인 · 집단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등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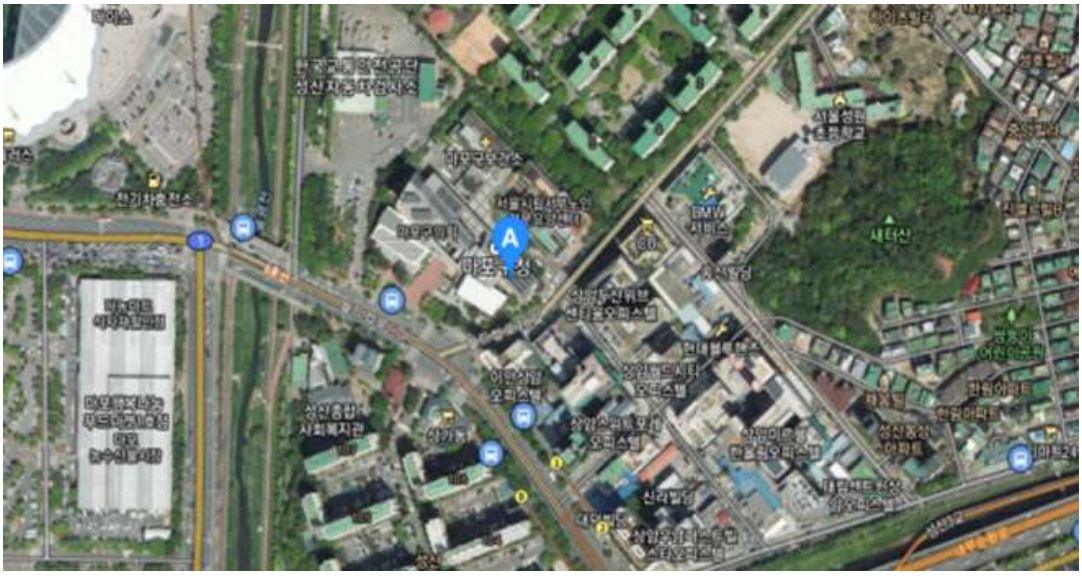

※ 5개분소 : 강서 · 강북 · 광진분소(’ 25.7.1.), 창동분소(’ 26.7.1.)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5.7.1.~2028.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 · 선정(신규위탁)

– 신규위탁 사유: 종합 · 총괄기능을 갖춘 대표센터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체계화와 전문성 강화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307백만원(’ 25년) ※ 2025년 추진 : 대표센터 1, 분소 3개소

○ 산출근거

– 인건비 2,350백만원, 운영비 158백만원, 사업비 799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이정화 (☎ 2133-4117)

서울특별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나.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관련 유해매체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아울러, 소규모센터 재구조화를 통하여 종합·총괄기능을 갖춘 1개 대표센터와 5개 부서단위 운영으로 업무체계화와 전문성 강화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시설규모 : 684.07㎡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면접상담실,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위치도

※ 6개분소 : 은평 · 분소 · 광진 · 동작 · 드림분소(’25.7.1.), 창동분소(’26.7.1), 성북분소(’27.7.1)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25.7.1.~2028.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 · 선정(신규위탁)
– 신규위탁 사유: 종합 · 총괄기능을 갖춘 대표센터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체계화와 전문성 강화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13백만원(’25년, 국비 435백만원, 시비 1,578백만원)
※ 2025년 추진 : 대표센터 1, 분소 4개소
○ 산출근거 : 인건비 1,779백만원, 운영비 76백만원, 사업비 158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 ·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 ·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 ·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 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 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 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이정화 (☎ 2133-4117)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2025년 상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나. 청소년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을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개인·전화·사이버·집단상담 등 상담사업
○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사업
○ 부모·지역센터 등 상담자 교육사업
○ 청소년안전망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꿈드림)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23
○ 개관일자 : 1997. 9. 19.

○ 시설규모 : 1,516㎡(지상 6층 · 7층)
○ 이용대상 : 청소년(만9세~24세)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25. 7. 1. ~ 2028. 6. 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044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440백만원, 운영비 149백만원, 사업비 1,680백만원, 사업외지출 775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 긴급구조 · 자활 ·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④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이나래 (☎2133-4129)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위탁기간이 2025.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서울특별시의 공공화된 최상의 글로벌 청소년 숙박공간과 전세계 여행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 「청소년 기본법」 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 여행청소년에게 질 높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국내·외 여행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
○ 국내·외 여행청소년의 교류활동 지원 및 생활지도·보호사업
○ 유스호스텔의 시설보수 및 안전 등 물적 설비 관리 등

라. 제3자 재위탁 : 해당

○ 필요성 :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갖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 위탁

○ 제3자 재위탁 중(예정)인 사무 : 2건

– 카페 운영 1건 및 식당 운영 1건

(현 계약기간 : 2023.7.1. ~ 2025.6.30.)

마.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개관일자 : 2011. 3. 28.

○ 시설규모 : 부지 1,597㎡ / 건물 9,807㎡

○ 주요시설 : 객실(95실), 회의실(6실), 편의시설(요리실, 카페, 레스토랑, 세탁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 치 도

바. 민간위탁기간: 3년(2025.7.1. ~ 2028.6.30.)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160백만원(’ 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530백만원, 운영비 1,861백만원, 사업비 338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431백만원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2019.9.26.>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 · 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 · 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태영 (☎02-2133-4124)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성북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 시립성북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 · 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660-9
○ 개관일자 : 2002. 9. 1.
○ 시설규모 : 부지 2,679㎡ / 건물 5,726㎡
○ 주요시설 : 수영장, 스터디카페, 청소년아지트, 드론축구장, 디지털 하이브리드 U-스페이스, 세미나실, 다목적활동장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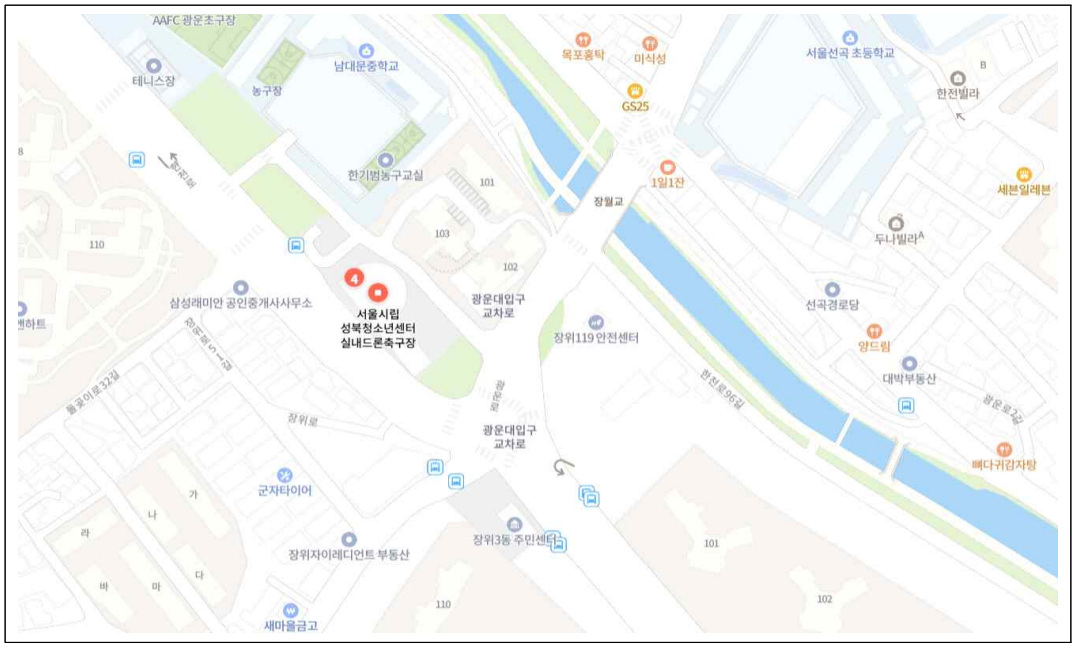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5.7.1. ~ 2028.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193백만원(’ 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273백만원, 운영비 641백만원, 사업비 2,185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94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 · 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 · 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태영 (☎02-2133-4124)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서울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 시립서울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 · 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11길 23
○ 개관일자 : 1970. 11. 11.
○ 시설규모 : 부지 985㎡ / 건물 6,911㎡
○ 주요시설 : 청소년아지트, 특성화공간 ‘움’, 동아리실, 예·체능실, 위탁형대안학교, 방과후아카데미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5.7.1. ~ 2028.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940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106백만원, 운영비 513백만원, 사업비 1,123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198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 · 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 · 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태영 (☎02-2133-4124)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 · 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29
○ 개관일자 : 2005. 6. 1.
○ 시설규모 : 부지 6,257㎡ / 건물 5,470㎡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소극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5.7.1. ~ 2028.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827백만원(’ 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02백만원, 운영비 839백만원, 사업비 2,128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558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 · 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 · 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태영 (☎02-2133-4124)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광진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 시립광진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 · 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구천면로 2
○ 개관일자 : 2006. 6. 8.
○ 시설규모 : 부지 2,081㎡ / 건물 5,632㎡
○ 주요시설 : 대극장, 천문특화시설(천체투영실, 천체관측실 등), 강의실, 청소년전용공간, 다목적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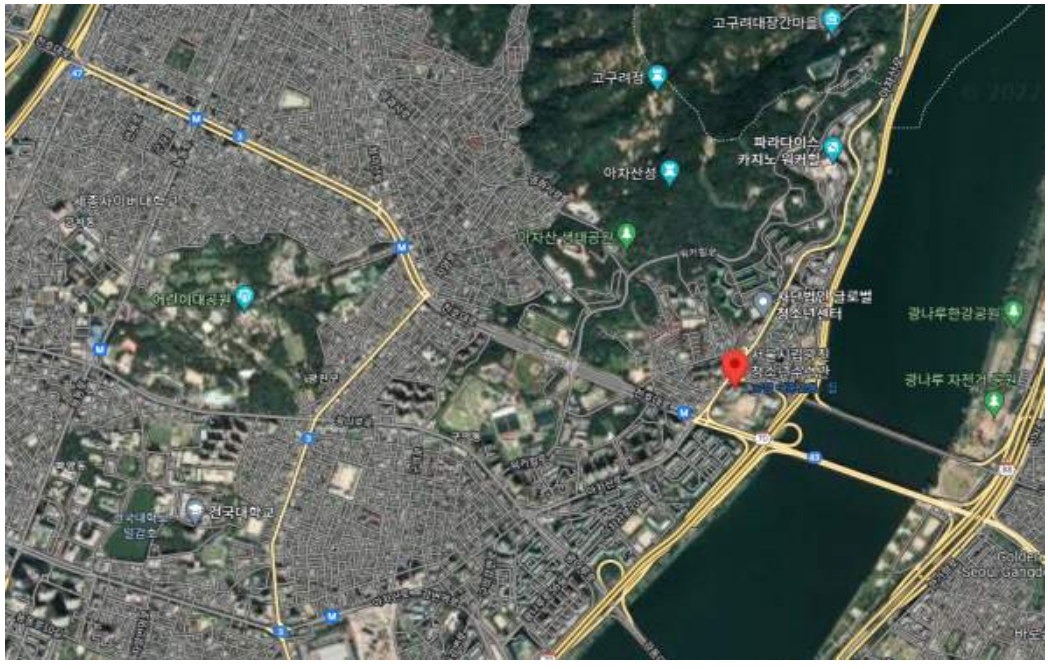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5.7.1. ~ 2028.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8백만원(’ 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071백만원, 운영비 446백만원, 사업비 1,394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97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 · 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 · 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태영 (☎02-2133-4124)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인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나.「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하여 기 출자동의(제326회 임시회) 받은 모태펀드 연계 방식의 운용에서는 기후테크 기업 외 일반기업에 투자되는 비율이 높고, 펀드 운용 관리에 제한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서울시 주도 펀드로 운용형태를 변경하고, 출자규모 등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 변경개요
○ 출자규모 : 10억원
– (기존) 20억원 → (변경) 10억원
○ 조성목표 : 15억원
– (기존) 200억원 → (변경) 15억원
‣서울시(20억원), 모태펀드, 민간출자자 → 서울시(10억원), 민간출자자
나. 필 요 성
○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새로운 기술 적용 없이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보유기업 육성 필요
○ 기후테크 산업의 투자 · 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초기 민간 투자가 미흡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지원 및 관리 필요
○ 일반기업 투자비율을 줄이고, 기후테크 기업 투자 집중 및 자금 지원 외 초기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육성 프로그램 도입 필요

3. 기후테크 펀드 출자 계획
가. 추진방향
○ 기후테크 혁신기업 발굴·육성 목표달성을 위해 서울시 주도펀드 운영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미래 新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기업 집중 육성
○ 우수 펀드 운용사를 선발,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펀드 운용 전문성이 높은 운용사를 선발하여 수익 안정성 확보
‣회수 자금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및 기업성장 환경 조성

나. 출자금액 : 10억원

○ 출자재원 : 기후대응기금

다. 기후테크 펀드 조성 계획

○ 펀 드 명 : 기후테크 펀드

○ 조성목표 : 15억원

‣서울시(10억원), 민간출자자

○ 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투자대상 : 서울 소재 기후테크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 등

‣서울 소재 기후테크 기업 중 창업 3년 이내 또는 연매출 20억원 이하 기업에 펀드 총 결성액의 70% 투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업무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금 예산 반영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복혜진 (☎ 2133-3586)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양천주민편익시설은 자원회수시설로부터 환경상 직·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향상을 도모하며,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나.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주민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중이며, 2025. 6. 30.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
  나. 위탁기간 : 3년 (’ 25. 7. 1. ~ ’ 28. 6. 30.)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필요성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의 운영 필요
  라. 위탁사무 내용
    ○ 편익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
    ○ 부대시설(주차장 등) 설치 및 관리
    ○ 주민 이용자의 소통체계 구축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편익 증진
    ○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
  마. 시설개요
    ○ 시 설 명 : 양천주민편익시설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 규　　모 : 지하3층/지상3층
    ○ 연 면 적 : 5,841.52m^2
    ○ 주요시설 : 수영장, 골프연습실, 헬스장, 독서실 등

○ 준공년월 : 1999. 4. (2016. 7. 리모델링)
○ 이용대상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
○ 시설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사. 소요예산 : 운영비 지원 없음(자립형으로 시설이용료 수익금으로 운영)
아. 기대효과
○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의 운영·관리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민간 운영을 통해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기대
○ 서울시 별도 예산 지원없이 운영하여 예산절감 효과 기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양천주민편익시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민경훈 (☎2133-3699)

2036년 제36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 유치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1988 서울올림픽이 동서 화합과 세계평화의 시작점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2036 올림픽은 서울이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선두 국가 이미지를 확고히 해 줄 국가적인 기회임

나.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24.5~11월) 편익/비용 비율(B/C값)이 1.03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민 85.2%(전 국민 81.7%)가 올림픽 재유치에 찬성하는 등 올림픽 유치의 필수 요소인 경제적 타당성과 재유치 찬성 여론이 모두 확보되었음

다. 이에, 대한체육회에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2036 제36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 유치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회개요(안)

○ 대 회 명 : 2036년 제36회 서울 하계올림픽대회
○ 대회기간 : 2036년 9월 중 / 약 17일간
○ 장 소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부산, 강원도 양양
○ 경기종목 : 32개 종목 (※ 2024 파리 하계올림픽대회 기준)
○ 대회규모 : 206개국 선수·임원 21,500명(예상)
○ 개최주기 : 4년 ※ 2028년 LA(미국) / 2032년 브리즈번(호주) 개최

나. 추진전략

○ 1988 서울올림픽 성공 개최 경험과 유산을 바탕으로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부족한 시설은 타 시·도 경기장을 활용하는 등 최소 비용(약 5.1조 원)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경제 올림픽 실현
○ 도심항공교통(UAM), 한강 버스 등 친환경 교통인프라 및 차세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올림픽 모델 제시
○ 문화로 세계를 잇는 K-컬쳐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 마련

다. 기대효과

○ 국제스포츠 이벤트는 투자 및 소비 지출의 증가에 의한 국내 경기 활성화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 외에도, 글로벌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옴
○ 전 국민 화합 도모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함

○ 2036 하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서울 브랜드 강화 및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

라. 소요 예산(추정치)

○ 서울시 총 소요예상액 : 2조 333억 원 추정

- 소요내역 : 개·폐회식, 경기장 개·보수, 선수촌, 대회 운영 등

계(100%)	시비(40%)	국비(10%)	조직위원회(50%)
5조 833억 원	2조 333억 원	5,100억 원	2조 5,400억 원

※ 「기재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서울시는 총사업비의 40% 이상 부담

※ 조직위원회 : IOC 지원금 1조 6,000억, 마케팅 수익·티켓 판매 9,400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시행 ’ 23. 8. 8./법률 제19592호)

제6조(대회 유치 승인)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 예산조치 : 국내 유치도시 선정(’ 25.2.28.) 후, 2026년도 이후 단계적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장용운 (☎ 02-2133-2686)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어울림플라자는 강서구 등촌동에 조성 중인 복지문화시설로, 2025년 하반기에 조성 완료 후 개관할 예정임
나. 어울림플라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울림플라자의 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 위탁사업 : 어울림플라자 운영
○ 위탁기간 : 2025. 6. ~ 2028. 5.(3년)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모집
○ 위탁방식 : 사무형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 민간위탁 필요성
–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비장애인의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 능력이 필요함
– 교육·문화·체육·여가생활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험과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의 운영이 적합
다. 주요 위탁 내용
○ 어울림플라자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규정 마련
○ 어울림플라자 운영 개시 준비
○ 어울림플라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기타 어울림플라자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등촌동)
○ 개관일자 : 2025년 11월 예정

○ 시설규모 : 지상5층, 지하4층(대지면적 6,683㎡, 연면적 23,915㎡)
○ 주요시설
–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장애인 특화공간(지상 3층 ~ 지상 5층)
· 장애인 교육·연수(객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 장애인치과병원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 공간(지하 2층 ~ 지상 2층)
· 수영장, 도서관, 강당, 공연장, 문화센터, 체육센터 등
– 지역주민 생활 편의 제공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임대공간(지하 2층 ~ 지상 2층)
· 근린생활시설(의원, 약국, 편의점, 카페, 식당 등), 업무시설
※ 장애인치과병원은 시민건강국, 임대시설(상가, 업무시설) 및 주차장·기계실은 SH공사에서 관리운영
○ 이용대상 : 서울시민(장애인, 비장애인, 지역주민 등)

마. 2025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2,264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문성훈 (☎ 2133-7443)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 장애인체육시설인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 5. 31.일자로 협약 만료됨 (’ 20.6.1.~’ 25. 5. 31.)
  나. 서울곰두리체육센터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육 및 여가 체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체육 및 재활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 필요
  다.「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장애인 생활체육 및 복지사업, 지역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사업
    – 체육센터 재산 및 기타 물품 등의 보존·유지 관리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위탁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나. 위탁범위 : 위탁사무 운영 빛 부동산·장비·물품 관리 일체
  다. 위탁기간 : ’ 25. 6. 1. ~ ’ 30. 5. 31.
  라. 운영개요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백만원)
서울곰두리 체육센터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271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 95.4.18.~ ’ 25.5.31. (8회)	’ 12.6.1. ~ ’ 25.5.31. (3회)	1,184(’ 25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곰두리체육센터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 별관(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추진(’ 24.11월 착공, ’ 26.12월 준공 예정) 중

※ 작성자 :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권보미 (☎ 2133-9616)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위탁 적정성 심의(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실시한 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 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2025. 5. 16. ~ 2030. 5. 15.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1,890,252천원(’ 25년 예산)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 2025년 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25. 1. 17.)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4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 추진 필요성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노인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년간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경험이 요구되며, 신 노년층 증가에 따라 이들에 맞는 고품질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필요함.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3.5.1. ~ 2006.4.30.(3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유지재단)
   ○ 2차 : 2006.5.1. ~ 2009.4.30.(3년,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재단)

○ 3차 : 2009.5.1. ~ 2012.5.15.(3년,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재단)
○ 4차 : 2012.5.16. ~ 2015.5.15.(3년,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 5차 : 2015.5.16. ~ 2020.5.15.(5년,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 6차 : 2020.5.16. ~ 2025.5.15.(5년,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복지실 어르신복지과 박성빈(☎ 2133-7418)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위탁 적정성 심의(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실시한 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 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2025. 8. 1. ~ 2030. 7. 31.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1,774,846천원(’ 25년 예산)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 2025년 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25. 1. 17.)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4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 추진 필요성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노인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년간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경험이 요구되며, 신 노년층 증가에 따라 이들에 맞는 고품질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필요함.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0.8.1. ~ 2003.7.31.(3년, 사회복지법인 작은예수회)
   ○ 2차 : 2003.8.1. ~ 2006.7.31.(3년, 사회복지법인 작은예수회)

○ 3차 : 2006.8.1. ~ 2009.7.31.(3년, 사회복지법인 작은예수회)
○ 4차 : 2009.8.1. ~ 2012.7.31.(3년,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 명칭변경)
○ 5차 : 2012.8.1. ~ 2015.7.31.(3년,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 6차 : 2015.8.1. ~ 2020.7.31.(5년,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7차 : 2020.8.1. ~ 2025.7.31.(5년,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복지실 어르신복지과 박성빈(☎ 2133-7418)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우리시에서 관리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수대상시설

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위 치	중랑구 면목동~ 구리시 아천동	금천구 시흥동~ 서초구 우면동
규 모	연장 3.5km, 왕복 4차로	연장 12.4km, 왕복 6~8차로
영업소	1개소	2개소(금천, 선암)
개통일시	2014.11.21.	2016.7.3.

구 분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위 치	강서구 신월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영등포구 양평동~ 금천구 독산동
규 모	연장 7.53km 왕복4차로	연장 10.33km 왕복4차로
영업소	1개소	1개소
개통일시	2021.4.16.	2021.9.1.

나. 통행료 조정 신고 현황

(단위: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중형	대형
용마터널	현 재 (’ 24.7.1)	1,700	2,900	3,800
	신 고 (’ 25.4.1)	1,700	3,000	3,800
	증 · 감	-	+100	-
강남순환로	현 재 (’ 24.7.1)	1,900	3,200	
	신 고 (’ 25.4.1)	1,900	3,300	
	증 · 감	-	+100	
신월여의 지하도로	현 재 (’ 24.7.1)	2,700		
	신 고 (’ 25.4.1)	2,800		
	증 · 감	+100		

다. 통행료 조정 : 통행료 동결

-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 시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25년 통행료 동결 필요
  - 신월여의지하도로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중인 자금 재조달 공유이익과 상계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

라. 통행료의 산출기초

- 협약상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전년도말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붙임-2 참조)

마.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 붙임-4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나. 예산조치 : 2025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의 통행료 동결에 따른 수익감소분 보전액(약 135백만원) 재정지원 필요

※ 작성자 :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이상원 (☎ 02-2133-8075)

붙 임

통행료 산정 관련 자료

1. 통행료 조정 근거 및 조정방법

○ 관계법령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조

○ 조정방법

– 협약상 기준통행료에 전년도말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통행료 조정(사사오입)

$$\text{'25년 통행료} = \text{기준통행료(실시협약)} \times \frac{\text{물가지수('24년도 말 기준)}}{\text{물가지수(불변일 기준)}}$$

○ 조정절차

조정 신고 (사업시행자)	⇒	검 토 (주무관청)	⇒	시의회 의견 청취	⇒	통행료 조 정	⇒	(미인상시) 재정지원 요청	⇒	차년도 예산편성	⇒	재정지원
(1월)				(2~3월)		(4.1일부터)		(익년 2월)				(익익년 2월)

2. 2025년 통행료 산출내역

【용마터널】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1.4월부터 '24.12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174.79%, 중형 차종 인상 대상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중형	대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a)		1,000.^{00}	1,700.^{00}	2,200.^{00}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d=c/b)				174.^{79}%
'01.04월 소비자물가지수(b)				65.^{74}
'24.12월 소비자물가지수(c)				114.^{91}
2025년	산정통행료(a×d)	1,747.^{95}	2,971.^{51}	3,845.^{48}
	적용통행료	1,700	**3,000**	3,800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4.12.

【강남순환로】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 00.11월부터 ’ 24.12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180.52%, 중형 차종 인상 대상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중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a)		1,067.48	1,814.72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d=c/b)		180.52%	
’ 00.11월 소비자물가지수(b)		63.66	
’ 24.12월 소비자물가지수(c)		114.91	
2025년	산정통행료(a×d)	1,926.98	3,275.88
	적용통행료	1,900	**3,300**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4.12.

【신월여의지하도로】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 07.2월부터 ’ 24.12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49.20%로 인상 대상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a)		1,862.00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d=c/b)		149.20%
’ 07.02월 소비자물가지수(b)		77.02
’ 24.12월 소비자물가지수(c)		114.91
2025년	산정통행료(a×d)	2,778.12
	적용통행료	**2,800**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4.12.

【서부간선지하도로】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7.7월부터 ’24.12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47.07%로 미인상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a)		1,920.31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d=c/b)		147.07%
’07.07월 소비자물가지수(b)		78.13
’24.12월 소비자물가지수(c)		114.91
2025년	산정통행료(a×d)	2,824.16
	적용통행료	**2,800**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4.12.

3. 차종 구분

구 분	대 상 차 량 제 원
소 형	승용차, 15인승 이하 소형버스, 2.5톤 미만 소형화물
중 형	16인승 이상 대형버스, 2축 이하, 2.5톤 이상~10톤 이하 화물차
대 형	3축 이상, 10톤 초과 화물차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길이 3.6m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4.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관리청	시 설 명	연 장 (km)	통행요금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2.96	소형 · 중형 : 2,500원
경기도	수석~호평	11.2	소형 : 1,600원, 중형 : 3,300원 대형 : 4,100원
경기도	일산대교	1.84	소형 : 1,200원, 중형 : 1,800원 대형 : 2,400원
강원도	미시령터널	3.69	소형 : 3,400원, 중형 : 5,800원 대형 : 7,500원
대구광역시	대구남부순환도로 (앞산터널로)	10.44	소형 : 1,700원, 대형 : 2,400원
경상남도	마창대교	1.70	소형 : 2,500원, 중형 : 3,100원 대형 : 3,800원
경상남도	창원~부산	22.48	소형 : 2,200원, 중형 : 3,200원 대형 : 4,400원

* 통행료는 2024.12.31. 기준임

5.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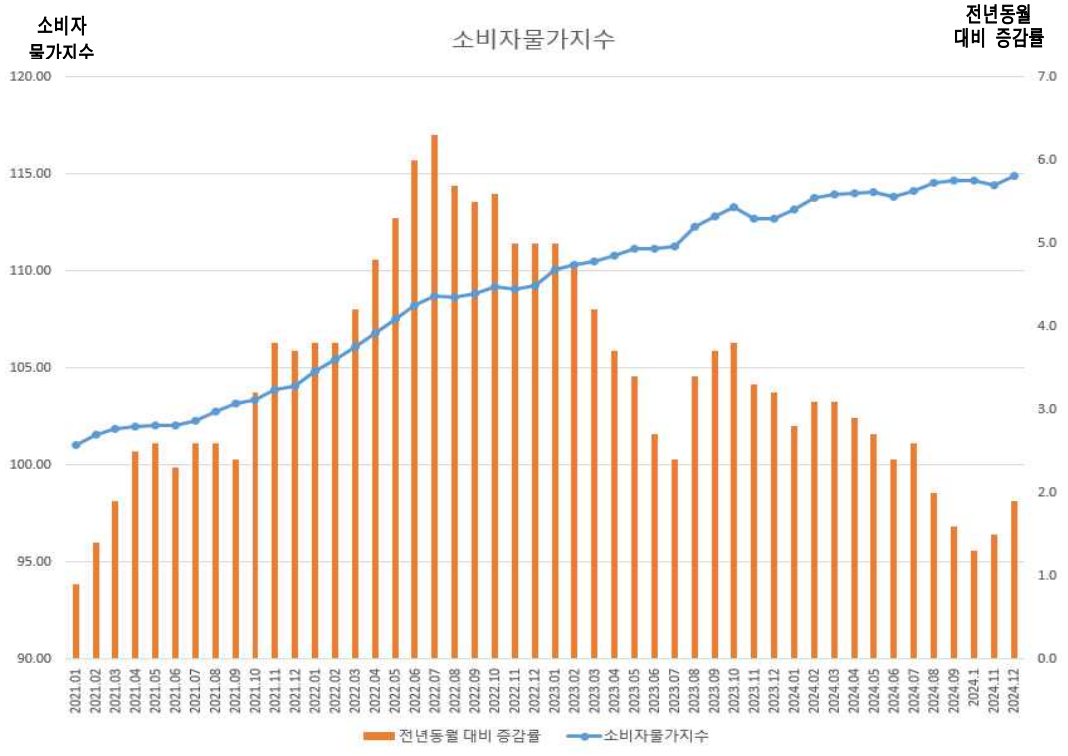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4.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 초·중학교 -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안건내용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학교	대학	대학	성북구 돈암동 173-1번지 일대	79,960	(감)12,395	67,565	서고시 제102호 (1977.4.11)	시설의 종류변경 (대학→초·중학교)
변경	②	학교	대학	초·중학교	성북구 돈암동 83-117번지 일대	-	(증)12,395	12,395		

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학	초·중학교		
①,②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초등학교 성신여자중학교	• 대학시설용지 중 일부를 변경 하여 초·중학교 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함 • 면적:12,395㎡(대학→초·중학교)	• 대학시설용지 중 현재 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초·중학교를 시설의 종류에 맞도록 변경하여 각각 사용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구역계획

구 역		구 분	면 적(㎡)	비 고
관 리	일반관리구역	①	44,152.0	

구 역		구 분	면 적 (㎡)	비 고
		②	6,679.0	
	소 계		50,831.0	
유 지	외부활동구역	③	6,186.0	
		④	3,143.0	
	소 계		9,329.0	
보 존	녹지보존구역	⑤	3,993.0	
		⑥	1,557.0	
		⑦	1,855.0	
	소 계		7,405.0	
합 계			67,565.0	

2) 밀도계획 (건폐율)

구 분		밀도산정기준면적(㎡)		조례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수정 캠퍼스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이하)	14,860	14,905	60.00	60.00	40.14	34.59	41.00	40.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52,888	52,660	60.00		39.36		40.00		
합 계		67,748	67,565	60.00	60.00	39.53	34.59	40.22	40.00	

※ 기정 결정 고시근거 : 서고시 제2013-345호(2013.10.17)
※ 밀도산정시 제외면적 : 해당없음.

3) 밀도계획 (용적률)

구 분		밀도산정기준면적(㎡)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관리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수정 캠퍼스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이하)	14,860	14,905	200.00	200.00	192.17	171.56	200.00	188.05	
	제2종일반 주거지역	52,888	52,660	200.00		200.19		200.00 (200.19)		
합 계		67,748	67,565	200.00	200.00	198.39	171.56	200.00	188.05	

※ ( )는 기존시설임.
※ 기정 결정 고시근거 : 서고시 제2013-345호(2013.10.17)
※ 밀도산정시 제외면적 : 해당없음.

4) 구역별 밀도계획 (용적률)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수정 캠퍼스	①일반	67,748	44,152	200.00	200.00	198.39	228.13	-	+50.00	200.00	250.00	•③,⑤,⑥,⑦구역에서 용적이전받음 (면적:22,076㎡)
	②일반		6,679		200.00		149.54		-		165.00	
	③외부		6,186		200.00		-		-117.46		5.00	•①구역으로 용적이전 (면적:7,266㎡)
	④외부		3,143		200.00		165.48		-		170.00	
	⑤녹지		3,993		200.00		-		-200.00		-	•①구역으로 용적이전 (면적:7,986㎡)
	⑥녹지		1,557		200.00		-		-200.00		-	•①구역으로 용적이전 (면적:3,114㎡)
	⑦녹지		1,855		200.00		-		-200.00		-	•①구역으로 용적이전 (면적:3,710㎡)
합 계		67,748	67,565	200.00	200.00	198.39	171.56	-	-	200.00	188.05	

※ 기정 결정 고시근거 : 서고시 제2013-345호(2013.10.17)
※ 밀도산정시 제외면적 : 해당없음.

5) 높이계획

구 분		높 이(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①일반관리구역	12층이하	• 해발고도 +93.8m이하 • 단, 높이계획을 초과하는 기존건축물은 현황높이 적용 - 성신관 : 104.85m - 수정관 : 102.88m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②일반관리구역	7층이하	• 해발고도 +93.8m이하 • 단, 높이계획을 초과하는 기존건축물은 현황높이 적용 - 성신여고 : 95.60m
	③외부활동구역		• 지표로부터 +12m(3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④외부활동구역	12층이하	• 해발고도 +93.8m이하
	⑤녹지보존구역		-
	⑥녹지보존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⑦녹지보존구역	7층이하	-

6) 변경 건축물 조서 : 해당없음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안)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학교	대학	초·중학교	성북구 돈암동 83-117번지 일대	-	(증)12,395	12,395	서고시 제102호 (1977.4.11)	시설의 종류변경 (대학→초·중학교)

2) 건축범위 결정(변경)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m)		건축제한완화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6이하	30이하	79이하	120이하	7층이하	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기정 결정 고시근거 : 서고시 제2013-345호(2013.10.17) → 제2캠퍼스 결정사항 반영

3. 입안사유

○ 대학시설 용지 내 초·중학교를 분리하여 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

○ 자체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13년 결정된 기숙사 계획을 야외정원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과 대학 간 지역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

- 대학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초·중학교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도시계획시설 : 학교

5. 주민 의견청취 사항

○ 의견청취기간 : 2024. 7. 18. ~ 8. 1.

○ 게 재 신 문 :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 열 람 장 소 : 성북구 도시계획과

○ 의견청취결과 : 주민의견 없음

6. 관련부서 검토의견

협의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성북구 교통행정과	ㅇ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지로 금회 변경 사항에 대하여, 최종 교통영향평가(2014.01)내용과 상이하므로 사업허가(승인)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선행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되어야 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업허가(인가)전까지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서울시 수변감성 도시과	ㅇ「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 사전 협의하여야 함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계획하여 사업 인·허가전 사전협의 하겠음	반영

7. 기 타

◯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공종별	총사업비	비고
계	2,500 (100.0%)	
교비	2,500 (100.0%)	학교자체예산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백만원)

공종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계	2,500	250	1,500	750	
교비	2,500	250	1,500	750	야외정원 조성

◯ 환경성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현재 학교 내 나대지인 부지에 기존 지형을 이용하여 지역주민과 학내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야외정원(조경계획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부 분야별로 환경성 검토를 분석해 본 결과, 해당 사업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검토됨

◯ 교통성 검토 결과

- 주변가로 및 교차의 서비스 수준은 A~C로 양호함

○ 추진경위

- '77.04.11.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 '03.01.06.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 '24.04.29.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신청
- '24.05.20. : 관계부서 사전 협의
  ⇒ 기 간 : '24.05.20.~05.31.
- '24.06.20. : 관계부서 사전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 '24.07.18. :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기 간 : '24.07.18.~08.01.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 '24.08.20. : 관계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 '24.09.03. : 성북구의회 의견청취
  ⇒ 2024년 제306회 성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24.11.19. :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자문)
  ⇒ 2024년 제3차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자문) : 원안가결
- '24.11.28. : 결정 요청 (성북구→서울시)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노송이 (☎ 2133-8413)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도(안). 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안 건 명 : 도시계획시설(도로,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안건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대로	3	A	26.6~50.3	주간선도로	5,165	관악구 남현동 산93-5	동작구 동작동 산29-3	자동차전용도로(지하도로)	-	• 도로 중복결정:지상 – 동작대로(7,349㎡) – 현충로(677㎡) • 철도 중복결정:지상 – 도시철도(732㎡) • 광장 중복결정:지상 – 이수광장(677㎡) • 공원 중복결정:지상 – 현충근린공원(4,090㎡) • 방재시설 중복결정:지상 – 방수설비B(4,433㎡) • 도로 중복결정:지하 – 과천대로(58,736㎡) – 동작대로(64,351㎡) – 중로3(187㎡) – 소로2-1(21㎡) – 소로1-B(145㎡) – 소로1-C(25㎡) • 철도 중복결정:지하 – 도시철도(13,385㎡) •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지하 –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796㎡) • 광장 중복결정:지하 – 사당IC광장(20,964㎡) – 사당광장(2,049㎡) – 이수광장(1㎡) • 공원 중복결정:지하 – 현충근린공원(2,700㎡) – 남태령제2소공원(24㎡) • 하천 중복결정:지하 – 하천(128㎡) • 학교 중복결정:지하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 경문고등학교(146㎡) •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지하 -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219㎡) •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지하 - 한국전력공사(616㎡) • 방재시설 중복결정:지하 - 방수설비B(11,165㎡)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기점	종점	입체적 결정 범위			최초결정일	비고
					구분		내용		
신설	3-A	지하도로	관악구 남현동 산93-5	동작구 동작동 산29-3	길이	이수방향	4,155m	-	•도로 중복결정:지하 - 과천대로(58,736㎡) - 동작대로(64,351㎡) - 중로3(187㎡) - 소로2-1(21㎡) - 소로1-B(145㎡) - 소로1-C(25㎡) •철도 중복결정:지하 - 도시철도(13,385㎡)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지하 -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796㎡) •광장 중복결정:지하 - 사당IC광장(20,964㎡) - 사당광장(2,049㎡) - 이수광장(1㎡) •공원 중복결정:지하 - 현충근린공원(2,700㎡) - 남태령 제2소공원(24㎡) •하천 중복결정:지하 - 하천(128㎡) •학교 중복결정:지하 - 경문고등학교(146㎡)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지하 -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219㎡)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지하 - 한국전력공사(616㎡) •방재시설 중복결정:지하 - 방수설비B(11,165㎡)
						과천방향	4,901m		
					폭	이수방향	13.3m		
						과천방향	13.3m		
					높이(평균해수면 기준)	이수방향	+58.92m(최저심도) -60.41m(최고심도)		
						과천방향	+58.96m(최저심도) -54.21m(최고심도)		
					수평투영면적		137,764㎡		

참고1) 입체적결정 높이(평균해수면 기준)는 구조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6m)을 포함한 값임
참고2) 지상구조물 입체적 결정 제외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3-A	1.연장 - 이수방향 L =4,546m, 과천방향 L=5,165m 2. 폭원(본선 지하터널) - 이수방향 B=13.3m, 과천방향 B=13.3m 3. 부속시설 - 유출입시설(동작IC) · 이수방향 : 방배동 1264번지 일원 · 과천방향 : 동작동 산29-3번지 일원 - 수직방재소 : 방배동 산102-8번지 일원	• 과천~동작대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지하도로 신설 사항으로, • 장·단거리 노선 분리를 통한 교통혼잡 개선 및 지상도로의 효율적 운영 도모

라.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B	방수설비	동작동 316-2번지 일원	-	62,190	62,190	-	•도로 중복결정:지상 - 동작대로(43㎡) - 대로1-67(107㎡)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지상 - 사당역 복합환승센터(538㎡) •하천 중복결정:지상 - 하천(113㎡) •도로 중복결정:지하 - 과천대로(1,382㎡) - 동작대로(21,271㎡) - 현충로(1,461㎡) - 광로3-64(929㎡) - 소로1-B(69㎡) - 소로3-2(158㎡) - 소로3-6(112㎡) - 소로3-49(72㎡) - 기타도로(127㎡) - 대로3-A(15,597㎡) •철도 중복결정:지하 - 도시철도(4,876㎡)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지하 -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024㎡) •광장 중복결정:지하 - 사당광장(2,048㎡) - 이수광장(3,994㎡) •공원 중복결정:지하 - 현충근린공원(2,133㎡) •하천 중복결정:지하 - 하천(2,96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마.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입체적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기점	종점	입체적 결정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내용		
신설	B	방수설비	방배동 507-1	동작동 316-2	길이	3,451m	-	•도로 중복결정:지하 - 과천대로(1,382㎡) - 동작대로(21,271㎡) - 현충로(1,461㎡) - 광로3-64(929㎡) - 소로1-B(69㎡) - 소로3-2(158㎡) - 소로3-6(112㎡) - 소로3-49(72㎡) - 기타도로(127㎡) - 대로3-A(15,597㎡) •철도 중복결정:지하 - 도시철도(4,876㎡)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지하 -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024㎡) •광장 중복결정:지하 - 사당광장(2,048㎡) - 이수광장(3,994㎡) •공원 중복결정:지하 - 현충근린공원(2,133㎡) •하천 중복결정:지하 - 하천(2,963㎡)
					폭	13.46m		
					높이 (평균해수면 기준)	-33.89m(최저심도) -69.72m(최고심도)		
					수평투영면적 (지상구조물 제외)	55,098㎡		

참고1) 입체적결정 높이(평균해수면 기준)는 구조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6m)을 포함한 값임
참고2) 지상구조물 입체적 결정 제외

바.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B	방수설비	1. 수평투영면적(전체) : 62,190㎡ 2. 부속시설 - 수직구#1 : 방배동 507-1번지 일원 - 수직구#2 : 방배동 438-20번지 일원 - 수직구#3 통합유지관리사무소 : 동작동 316-2번지 일원	•집중호우로 인한 사당천 유역 일대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빗물 저류 방수설비 신설

3. 입안사유

○ 동작구(이수교차로) ~ 과천시 과천동(관문사거리)간 지하도로를 신설하여 과천·동작대로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사당천 유역 일대의 상습 침수피해 저감을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결정(변경)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가. 용도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제1종 · 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나. 도시계획시설 : 도로, 방수설비, 철도, 자동차정류장, 하천, 광장, 공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전기공급설비

다. 기 타 : 사당 · 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5. 주민 의견청취사항

가. 열 람 기 간 : 2024. 11.21. ~ 2024. 12. 05.

나. 게 재 신 문 : 서울신문, 매일경제

다. 열 람 장 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관악구청, 서초구청, 동작구청, 과천시 도시정책과

라. 접 수 의 견 : 16건

제출인	제출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박ㅇ우	· 수직방재소의 위치는 백석예술대학교의 경찰경호학부 학생들이 수업에 이용하는 실습장이며 교육부 인가받은 교육연구시설임. 인근 사회복지시설도 있으니 수직방재소 계획을 철회해주기 바람	· 수직방재소는 재난발생시 피난대피로 역할 및 화재시 화재연기를 배출하는 목적으로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부)」「서울형 지하시설물 안전설계 및 재난대응 가이드라인(서울시)」 등에 따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입지지역 주변으로 도심지 밀집 주거지역, 국가지정문화재(역사문화보존지역), 군사제한구역 등 토지행위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시 제한이 없고,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 하면서 남부순환로 활용으로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위치로 계획하였음 · 방배동 산102-8번지내 학생 실습시설에 대해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체시설 등 대안을 수립하여 백석예술대학교와 사전협의 후 사업시행 하겠음 · 인근 노유자시설(까리타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공사 시 피해저감시설(세륜, 세차 등)을 설치하여 인근 피해저감조치 하겠으며, 도로개설 후 재난 발생시(사고 발생 등)에만 운영되는 비상주시설이므로 소음 등 환경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함	미반영
이ㅇ	·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습장으로 수직방재소 위치 계획의 수정 필요	상동	-
송ㅇ은	· 방배동 산102-8번지는 인근 까리타스 어린이집, 급식소 등 노유자를 위한 시설이 있음. 수직방재소 계획 변경 요구	상동	-
박ㅇ식	· 수직방재소 위치를 터널 가까운 곳으로 이전 설치 요청	상동	-
윤ㅇ은	· 방배동 산102-8번지에 대해 수직방재소 설치는 학생들에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계획 수정을 요청함	상동	-

제출인	제출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강○일	· 수직방재소 위치에 대해 계획 변경 요청	상동	-
이○직	· 수직방재소 위치를 계획중인 터널에서 근접한 위치로 계획 변경 요구	상동	-
김○현	· 방배동 산102-8번지는 백석예술대 체력단련장으로 학생들의 수업공간임. 수직방재소 이동을 요청함	상동	-
이○돈	· 백석예술대학 학생들이 이용중인 교육연구시설에 수직방재소 설치는 학습권을 무시한 결정임. 계획의 수정 필요	상동	-
손○희	· 수직방재소 위치를 사당역 인근에 대지가 충분하니 이설 요청	상동	-
조○빈	· 수직방재소 계획 반대 및 계획 수정 요청	상동	-
박○미	· 협의 없는 수직방재소 설치는 반대하며 계획 수정 요청	상동	-
한○원	· 수직방재소 위치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무료급식소등 시설이 위치하는 곳으로 설치 계획 반대, 수정요청	상동	-
이○욱	· 수직방재소 설치 계획 강력 반대 및 계획 수정 요청	상동	-
한○수	· 방배동 산102-8번지는 매학기 야외학습장으로 이용중이며, 효율적 학습장 운영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공사 진행중임. 수직방재소 계획의 변경을 요청함	상동	-
정○석	· 사당역 주변에 다른 공간도 많이 있으며,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에 수직방재소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바람	상동	-

6.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협의부서	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국방부 시설계획과	· (51사단참모처) 복합터널 개통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발생 우려되어 방음벽 설치 필요	· 본 사업 개통 후 수송사령부 통과구간의 상부도로 교통량은 복합터널과 교통량이 분산되어 당초 대비 감소됨에 따라 소음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근거자료를 해당 부대에 제출하여 협의하겠음	미반영
	· (52사단참모처) 수방사 심정 1개소는 과거 지하공사로 급수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음. 유사 사례 우려되니 사전협의 필요	· 수방사 심정 1개소에 대하여 지하수위 등 사전협의를 통하여 대책방안을 검토하겠음	반영
	· (52사단참모처) 통합유지관리사무소 신축 시 협의고도 30m 이내로 신축, 진동, 소음에 대한 대책 필요(대공방어협조구역)	· 통합유지관리사무소 신축 시 협의고도 기준과 공사시 진동, 소음에 대한 대책을 반영하여 협의하겠음	반영
	·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시행 간 편입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은 수방사와 선협의 후 협의 완료 서류를 시설단으로 송부할 것. 토지보상법에 따라 별도 협의 예정(국방부 토지의 지하구간 이용사항 포함)	· 수도방위사령부 협의 완료 서류 제출 후 국유재산 사용 협의 별도 진행하겠음.	반영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건설환경과) 수방사 소유의 토지(남현동 산94-14등 5필지[2,322㎡]가 사업부지에 편입됨. 수방사와 면하는 과천대로의 지하 공사중 발파, 굴착으로 인한 시설 피해 가능성 우려되어 다음 조치사항 필요.		반영
	- 한울아파트 앞 차도의 지하편입 관련 서울경기남부시설단과 사전 토지사용 협의	· 본 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서울경기남부시설단과 협의 하겠음.	
	- 착공 전·준공 후 주변 건물(구조물)의 시설 피해 조사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요청	· 착공 전 주변 부대시설물 조사를 실시하여 굴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준공 후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시 원상복구 하겠음	
	- 공사로 인한 부대 진출입 및 교통제한 등 부대운영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요청	· 본 사업 실시계획승인시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하여 부대운영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부대에 통보 및 조치하겠음.	

협의부서	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한강유역 환경청 총무과	· 청 소관 국유재산(동작구 326-1, 326-2)은 '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구간으로, 하천법에 따라 폐천부지 고시가 필요. 이에 해당 국유재산의 유·무상귀속, 사용허가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 결정 이후 폐천부지의 재산관리관과 협의 필요	· 폐천부지 고시 후 폐천부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겠음.	반영
서울 국유림 관리소	· 본 협의는 요청된 국유림에 한하며 편입 필지 및 면적의 변경, 그 밖에 사업계획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협의 필요	· 사업 내용 변경 시 재협의하겠음.	반영
	·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협의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은 의제되지 않으므로 향후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2조에 따라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 산지전용협의 시 「산지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 작성 기준 등에 맞게 사업계획 수립바람	· 사업 내용 변경 시 재협의하겠음 -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 국유림 편입지 중 동작동 산29-3의 지상도로 편입지(3,994㎡)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그 외 편입지는 사용허가(대부) 받은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시 국유림에서 발생한 토석은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매수 후 사업시행하여야 합니다.	· 편입 국유지는 「민간투자법」 제19조 「산지관리법」 제35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무상사용(양여)가 가능하므로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 후 사업시행 하겠음	부분반영
	· 본 협의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고시 후 고시문을 우리 관리소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람	·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은 후 사업 시행 바람	·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경찰청 경무담당관	· 국유재산(서초구 방배동 산184번지) 관련, 본 공사로 인한 지반약화, 침하 등 인근시설물에 영향 우려되어 안전성 검토자료 제출 요청	· 본 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지하 시설물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출하겠음	반영
	· 사업대상지 포함되는 국유재산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 전 사용허가 필요	·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서울시 도로관리과	· 저소음 포장은 소음저감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작IC 도로관리과 구간의 소음방지 대책중 저소음포장은 삭제하기 바람	· 저소음포장 등 소음방지 대책은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부서와 협의 후 조치하겠음	부분반영

협의부서	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서울시 도시철도과	· 9호선 동작역 하부 통과시 안전성 검토할 것	· 철도횡단심의를 통해 9호선 동작역 하부 통과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겠음	반영
	· 착공 전 철도보호지구행위신고 할 것	· 착공 전 관련부서 협의 후 철도보호지구행위 신고하겠음	반영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과	· 사업부지 일부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 전 원지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매장유산 조사(시굴, 표본조사) 실시 필요	· 국가유산청 보존대책에 따라 착공 전 매장유산 조사를 실시하겠음	반영
	·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으며, 해당 매장유산 조사 완료후에는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보존조치를 받기전 착공이 불가함	· 시공 전 매장유산 조사 후 문화재 발견 시 보존조치 후 착공하겠음	반영
관악구 도시관리과	· 국유재산법제18조, 제30조 및 국유재산관리규정제19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협의 대상 포함됨	· 관련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 협의 후 사업시행하겠음.	반영
	· 민간투자법제19조에 따라 상기 국유재산은 실시계획 고시날 부터 준공확인이 있을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은 준공 후 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기간이 끝날때까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음	· 관련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 협의 후 사업시행하겠음.	반영
서초구 도로과	· 본 사업 노선 일부가 사유지 하부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구분지상권 절차가 수반되어 토지등기부에 등재되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별도 안내 등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민간투자법」제20조 및 「토지보상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 등 사유지 토지 보상 전 이해관계인(토지주 및 건물주 등) 의견 청취 하겠음	반영
서초구 가로행정과	· 본 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에 대하여, 지하부분은 구분지상권 설정, 지상 부분은 용도폐지 필요	· 지하 편입구간은 구분지상권 설정하겠으며, 지상 편입구간은 유·무상귀속 협의하겠음	반영
동작구 도시계획과	· 동작주차공원 내 구 정책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 바라며, 방수설비 계획은 구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요청	· 방수설비인 빗물배수터널은 동작주차공원 하부 대심도로 통과하여 간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 후 조치하겠음	반영
동작구 도로관리과	· 갯마을 주변 유출입부는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 사업완료 전 방음벽 설치 여부 검토 바람	·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소음저감시설 설치 여부를 반영하겠음	반영

협의부서	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 현충로 유입부에 보행안전 및 편의(엘리베이터+육교)설치 반영바람	· 보행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와 육교를 설치하겠음	반영
	· 공사구간 내 구 관할 도로시설물 저촉 및 철거(이설) 필요할 시, 착공 전 공사계획에 대해 협의 바람	· 저촉 및 철거(이설) 되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공사계획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 사업완료 후 이수교차로 종점부의 직결도로(연속류) 연결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지하도로 종점부상 직결도로 연결이 필요할 시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 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음	반영
동작구 공원녹지과	· (공원)산책로(동작동 산29-3) 영향여부 검토, 이설 필요시 사업내용 반영	· 본 사업도로 건설로 인한 기존 산책로 저촉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 산책로 이설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반영
	· (산지) 동작IC진입부 사면구간 상부도 수목전도, 토사유출 우려되니 사면안전 공법 추가 요청.	· 동작IC 진입부 사면구간은 우수로 인한 토사유출 및 수목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계획(측구 및 낙석방지책)을 충실히 수립하여 반영하겠음	반영
	· (산지) 산지전용 대상지 중 원형보존지의 경우 관련 협의 이행 필요	· 산지전용 대상지중 지상부 원형보전지인 터널구간으로써,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와 동일하게 지상 · 지하 전용구간 포함하여 산지전용허가(협의) 절차 이행하겠음.	반영
	· (조경) 가로수 제거 및 이식 시 조례에 따라 신청서 제출 및 승인 필요	· 가로수 제거 및 이식 공사 시 관련부서 협의 후 가로수 승인 신청서 및 도로점용허가증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제출 및 승인 받겠음	반영
동작구 치수과	· 사당2동 일대 침수해소를 위한 추가 수직구 설치가 필요한 바, 해당 부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바람	· 사업 추진 일정 및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수직구 추가는 곤란하며, 향후 동작구의 추가 수직구 등 장래 확장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결횡부분을 실시설계중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서울 교통공사	· (사업계획처)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사당주차장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장래 건축물 계획 고려	·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고려하여 본 사업 계획하였음	반영
	- 본사업의 지하도로, 방수설비 상부에 건설예정인 복합환승센터 건축물의 하중을 고려한 계획 수립(또는 우회 검토 등) 요망	· 대심도 복합터널(도로, 방수설비) 건설 사업으로 상부 건축물 하중에 영향없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협의부서	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 기부채납 의무시설인 환승시설, 환승주차장, 저류시설 등 장래 계획 지장없도록 연계 고려 바람	· 현재 사당주차장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 사업은 대심도(-60m)로 통과하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의 장래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연계 계획하였음	반영
	· (토목처)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실시설계승인 전 흙막이 설계도서, 지반조사 보고서 등 제반 서류 제출하여 협의 완료 필요	· 실시계획 승인 전 철도보호지구행위절차에 따라 협의서류 제출하여 협의 완료하도록 하겠음	반영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 방배동 산102-8번지는 본 대학 경찰경호학부 등에서 매 학기 교육과정 및 강의계획서에 따라 실습장(야외학습장)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안전상의 문제로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초구청의 허가를 득하여 국방부 방공호 제거 및 사유림 재해예방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본 대학에서는 실습장이 부족한 상황으로 해당 부지는 원활한 학사운영 및 재학생들에게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소로서 서울시에서의 협조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수직방재소는 재난발생시 피난대피로 역할 및 화재시 화재연기를 배출하는 목적으로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부)」「서울형 지하시설물 안전설계 및 재난대응 가이드라인(서울시)」 등에 따라 설치 계획하였으며, · 입지지역 주변으로 도심지 밀집 주거지역, 국가지정문화재(역사문화보존지역), 군사제한구역 등 토지행위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시 제한이 없고,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 하면서 남부순환로 활용으로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위치로 계획하였음 · 편입부지 내 토지 및 지장물은 토지보상법 및 감정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 후 보상조치할 계획임	미반영

※ 과천시 구간에 대한 관련(부서)기관 접수의견은 총23건임(반영 14건, 의견없음 9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지자체별로 진행함

7.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 자금조달방안 :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민간투자비	자기자본	589	
	타인자본	2,242	
재정지원금	건설보조금	2,660	
	보상비	316	
계		5,807	2016년2월1일 불변가격

– 단계별집행계획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연차별 투자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총사업비	5,807	303	600	726	1,272	1,508	1,398
민간투자비	2,831	196	391	327	566	669	682
건설보조금	2,660	-	-	399	706	839	716
보상비	316	107	209	-	-	-	-

나. 추진경위

– ’ 17.03. 민간제안서 제출
– ’ 19.07. 민자적격성 조사(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 21.0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롯데건설 컨소시엄)
– ’ 21.08~. ’ 23.02. 실시협약 협상
– ’ 23.08.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市)
– ’ 23.09.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기획재정부)
– ’ 23.12. 시의회 보고
– ’ 23.12.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 ’ 24.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접수(시행자→市)
– ’ 24.11.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노승환 (☎ 2133-8454)

붙임 1. 위치도 및 사업노선 현황 1부.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도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5-50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2025. 1. 9. 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나. 2025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며,

다. 일반직공무원 정·현원 불일치 해소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직속기관 포함)
: 6급 (증)1명, 계 (증)1명

○ 각급학교
: 8급 (감)1명, 계 (감)1명

나. 일반직공무원 직렬별·직급별 정원 조정

○ 6급: 전산 6급 (증)1명, 계 (증)1명

○ 8급: 교육행정 8급 (감)1명, 교육행정·보건 8급 (증)1명, 운전 8급 (감)1명, 계 (감)1명

다. 특정직공무원 정원 조정

○ 각급학교: 장학사·교육연구사 (증) 154명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10층 행정관리담당관(우 03178)

○ 이메일: jeunsan@sen.go.kr(※ 전화문의: 02-2282-8644)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876	6	1,843	1,372	4,655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일반직	일반직 계		7,125	6	1,561	1,057	4,501
	2·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3급	부이사관	9	–	9	–	–
	3·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4급	소계	44	–	33	11	–
		서기관	39	–	29	10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	4	1	–
	4·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7	–	7	–	–
	5급	소계	339	1	152	55	131
		교육행정	248	1	89	41	117
		행정	6	–	6	–	–
		사서	31	–	31	–	–
		보건	1	–	1	–	–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	4	–	6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3	2
		교육행정 또는 시설	2	–	2	–	–
		공업 또는 시설	20	–	9	11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6	–	–	–	6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
	6급	소계	2,010	5	529	289	1,187
		교육행정	1,283	5	229	165	884
		전산	53	–	31	22	–
		사서	130	–	119	11	–
		공업	14	–	12	–	2
		녹지	1	–	1	–	–
		보건	19	–	9	10	–
		식품위생	6	–	4	–	2
		간호	5	–	5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시설	42	–	19	23	–
		방송통신	1	–	1	–	–
		시설관리	305	–	43	11	251
		운전	5	–	2	–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10	–	4	–	6
일반직	6급	열관리운영	21	–	11	–	10
		사무운영	61	–	24	12	25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 · 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1	9	–
	7급	소계	2,692	–	586	469	1,637
		교육행정	1,720	–	257	325	1,138
		전산	60	–	49	11	–
		사서	173	–	173	–	–
		공업	21	–	9	12	–
		녹지	1	–	1	–	–
		보건	31	–	17	14	–
		간호	5	–	5	–	–
		시설	48	–	19	29	–
		시설관리	514	–	21	15	478
		운전	12	–	3	6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72	–	21	33	18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보건 또는 식품위생	2	–	2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8	–	1	7	–
	8급	소계	1,999	–	231	222	1,546
		교육행정	1,272	–	66	118	1,088
		전산	24	–	13	11	–
		사서	85	–	85	–	–
		공업	14	–	2	12	–
		보건	22	–	5	17	–
		시설	50	–	8	42	–
		시설관리	502	–	43	6	453
		운전	11	–	1	5	5
		전기운영	–	–	–	–	–
일반직	8급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1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9급	소계	–	–	–	–	–
		시설관리	–	–	–	–	–
		운전	–	–	–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전문 경력관	소계	7	–	7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제작PD	1	–	1	–	–
		평생교육사	–	–	–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다군	4	-	4	-	-
		속기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소계	14	-	3	11	-
	연구사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별정직	별정직 계		8	-	8	-	-
	4급 상당(비서)		1	-	1	-	-
	5급 상당(비서)		4	-	4	-	-
	6급 상당(비서)		3	-	3	-	-
특정직	특정직 계		742	-	273	315	154
	장학관·교육연구관	소계	125	-	69	56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74	-	40	34	-
	장학사·교육연구사		617	-	204	259	154

신·구 대비표

현 행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722	6	1,842	1,372	4,502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일반직	일반직 계		7,125	6	1,560	1,057	4,502
	2·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3급	부이사관	9	-	9	-	-
	3·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4급	소계	44	-	33	11	-
		서기관	39	-	29	10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	4	1	-
	4·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7	-	7	-	-
	5급	소계	339	1	152	55	131
		교육행정	248	1	89	41	117
		행정	6	-	6	-	-
		사서	31	-	31	-	-
		보건	1	-	1	-	-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	4	-	6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3	2
		교육행정 또는 시설	2	-	2	-	-
		공업 또는 시설	20	-	9	11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6	-	-	-	6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
	6급	소계	2,009	5	528	289	1,187
		교육행정	1,283	5	229	165	884
		전산	52	-	30	22	-
		사서	130	-	119	11	-
		공업	14	-	12	-	2
		녹지	1	-	1	-	-
		보건	19	-	9	10	-
		식품위생	6	-	4	-	2

개 정 안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876	6	1,843	1,372	4,655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일반직	일반직 계		7,125	6	1,561	1,057	4,501
	2·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3급	부이사관	9	-	9	-	-
	3·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4급	소계	44	-	33	11	-
		서기관	39	-	29	10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	4	1	-
	4·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7	-	7	-	-
	5급	소계	339	1	152	55	131
		교육행정	248	1	89	41	117
		행정	6	-	6	-	-
		사서	31	-	31	-	-
		보건	1	-	1	-	-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	4	-	6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3	2
		교육행정 또는 시설	2	-	2	-	-
		공업 또는 시설	20	-	9	11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6	-	-	-	6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
	6급	소계	2,010	5	529	289	1,187
		교육행정	1,283	5	229	165	884
		전산	53	-	31	22	-
		사서	130	-	119	11	-
		공업	14	-	12	-	2
		녹지	1	-	1	-	-
		보건	19	-	9	10	-
		식품위생	6	-	4	-	2

현 행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간호	5	-	5	-	-
		시설	42	-	19	23	-
		방송통신	1	-	1	-	-
		시설관리	305	-	43	11	251
		운전	5	-	2	-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10	-	4	-	6
		열관리운영	21	-	11	-	10
		사무운영	61	-	24	12	25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1	9	-
	7급	소계	2,692	-	586	469	1,637
		교육행정	1,720	-	257	325	1,138
		전산	60	-	49	11	-
		사서	173	-	173	-	-
		공업	21	-	9	12	-
		녹지	1	-	1	-	-
		보건	31	-	17	14	-
		간호	5	-	5	-	-
		시설	48	-	19	29	-
		시설관리	514	-	21	15	478
		운전	12	-	3	6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72	-	21	33	18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보건 또는 식품위생	2	-	2	-	-

개 정 안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간호	5	-	5	-	-
		시설	42	-	19	23	-
		방송통신	1	-	1	-	-
		시설관리	305	-	43	11	251
		운전	5	-	2	-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10	-	4	-	6
		열관리운영	21	-	11	-	10
		사무운영	61	-	24	12	25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1	9	-
	7급	소계	2,692	-	586	469	1,637
		교육행정	1,720	-	257	325	1,138
		전산	60	-	49	11	-
		사서	173	-	173	-	-
		공업	21	-	9	12	-
		녹지	1	-	1	-	-
		보건	31	-	17	14	-
		간호	5	-	5	-	-
		시설	48	-	19	29	-
		시설관리	514	-	21	15	478
		운전	12	-	3	6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72	-	21	33	18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보건 또는 식품위생	2	-	2	-	-

현 행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8	-	1	7	-
	8급	소계	2,000	-	231	222	1,547
		교육행정	1,273	-	67	118	1,088
		전산	24	-	13	11	-
		사서	85	-	85	-	-
		공업	14	-	2	12	-
		보건	22	-	5	17	-
		시설	50	-	8	42	-
		시설관리	502	-	43	6	453
		운전	12	-	1	5	6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	-	-	-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9급	소계	-	-	-	-	-
		시설관리	-	-	-	-	-
		운전	-	-	-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전문 경력관	소계	7	-	7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 제작PD	1	-	1	-	-
		평생교육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다군	4	-	4	-	-
		속기사	-	-	-	-	-

개 정 안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8	-	1	7	-
	8급	소계	1,999	-	231	222	1,546
		교육행정	1,272	-	66	118	1,088
		전산	24	-	13	11	-
		사서	85	-	85	-	-
		공업	14	-	2	12	-
		보건	22	-	5	17	-
		시설	50	-	8	42	-
		시설관리	502	-	43	6	453
		운전	11	-	1	5	5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9급	소계	-	-	-	-	-
		시설관리	-	-	-	-	-
		운전	-	-	-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전문 경력관	소계	7	-	7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 제작PD	1	-	1	-	-
		평생교육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다군	4	-	4	-	-
		속기사	-	-	-	-	-

현 행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연구사	소계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별정직	별정직 계		8	-	8	-	-
	4급상당(비서)		1	-	1	-	-
	5급상당(비서)		4	-	4	-	-
	6급상당(비서)		3	-	3	-	-
특정직	특정직 계		588	-	273	315	-
	장학관·교육연구관	소계	125	-	69	56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74	-	40	34	-
	장학사·교육연구사		463	-	204	259	-

개 정 안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연구사	소계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별정직	별정직 계		8	-	8	-	-
	4급상당(비서)		1	-	1	-	-
	5급상당(비서)		4	-	4	-	-
	6급상당(비서)		3	-	3	-	-
특정직	특정직 계		742	-	273	315	154
	장학관·교육연구관	소계	125	-	69	56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74	-	40	34	-
	장학사·교육연구사		617	-	204	259	15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2조(직급별정원) ①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직급별정원) ①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 -

2025년 월 일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